예금실무법률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수 조 은 희
☎(041) 560-5261
E-mail : 99email@koreapost.go.kr

학습목표

1. 예금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2. 각종 금융사고 및 고객민원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다.
3.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인으로서 우체국예금 사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목 차

제 1 장 예금계약의 성립과 소멸 ·····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
제2절 예금계약과 예금거래약관 ·····
제3절 예금계약과 금융실명거래 ·····
제4절 예금계약의 소멸 ·····

제 2 장 예금채권의 지급과 이전 ·····

제1절 예금채권의 지급 ·····
제2절 예금주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 ·····
제3절 예금의 강제집행 ·····
제4절 예금의 양도 및 질권 설정 ·····

제 3 장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1절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 ·····
제3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

제1장 예금계약의 성립과 소멸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1. 예금계약의 법적성격

가. 예금계약 특징

1) **채권계약** : 금전의 보관과 이식(利息)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예금을 수입운용 한 후 이것을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체신관서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채권계약
2) **법률행위**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되어 있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3) **부합계약** :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량적·반복적·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됨
4) **소비임치** : 예금은 단순임치와 달리 소비대차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통설은 그 기본적 성질을 소비임치라고 설명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

민법 연구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민법 제694조)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차이점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소비임치의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반환청구) 가능(민법 제702조)
- 소비대차의 대주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지만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 가능(민법 제603조)

[참고판례 1] ≪대법원 선고 85다카880 판결(1985.12.24.)≫

◈ 이른바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회사를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

예금계약 Q/A

Q.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아래 업무의 계약의 성격이 맞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보호예수	.	.	**임치**
대여금고	.	.	**소비임치**
여신업무	.	.	**소비대차**
수신업무	.	.	**임대차**

사례연구

(1) **낙성계약**인가 요물계약인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과거에는 ①예금계약 체결시 예금주가 반드시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인도함 (소위 초입금)을 요한다는 점 ②예금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예금을 하겠다고 청약을 한 사람이 금융회사가 승낙을 하였음에도 선이행 채무인 예금을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를 강제이행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요물계약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회사의 예금취급관행이 바뀌어 예금계약 체결시에 그러한 금전의 인도를 요하지 않은 예금(0원 통장 개설 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낙성계약이 대두되고 있다.

(2) **편무계약**인가 쌍무계약인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예금계약은 예입을 조건으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원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편무계약이다.

(3) **무상계약**인가 유상계약인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지 않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하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예금계약의 예금주는 보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치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게 되는바, 예금주인 임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계약은 그 보관에 따른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무상계약이다.

나.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예금반환채권・채무의 성립시기)

1) 현금거래

가)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 예금자가 현금을 은행 창구에 내민 것을 은행 담당직원이 안 때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행 담당직원이 이를 수령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 예금자가 청약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한 때

[참고판례2] ≪대법원 선고 2003다30159 판결(2005.12.23)≫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회사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회사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회사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현금으로 계좌 송금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참고판례 3] ≪대법원 선고 2007다51239 판결(2007.11.29)≫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Q1. 송금의뢰인이 오송금 된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 예금주의 동의 필요 : 예금주가 반환을 거절할 경우 오 송금한 송금의뢰인은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예금을 반환받아야 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Q2. 우체국 직원의 조작오류로 인한 입금착오인 경우에는?

▷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오류처리) ① 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

제23조(취소거래의 정의) 취소거래란 의뢰기관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4조(취소가능거래) ① 취소거래는 당일 발생거래중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의뢰기관내부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만 취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거래는 제7조 및 제8조의 당일 타행환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운영시간 후에는 취소처리할 수 없다.

Q3.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하여 예금주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횡령】)

무통장입금거래는 제3자앞 계좌송금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금주 이외의 자가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위임에 해당되고 은행이 입금을 완료한 때에는 위임행위가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예금주는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입금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졌고, 은행의 전산기기에 의하여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예금주가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없이 입금을 취소할 수 없다.

2) 타은행 수표 등으로 수입된 경우

가) 송금 등 계좌 입금 시 :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나) 즉시 지급 요청 시 : 결제를 확인(지급)한 때

- 추심위임설 : 타점권 예입은 우체국이 그 추심을 마쳤을 때 예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설
- 권리이전설 : 타점권 수입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동 타점권에 대한 권리도 예금주로부터 우체국에 이전되며 우체국은 자기의 권리로서 어음교환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부도어음 또는 수표의 권리자로서 상환청구를 하든지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예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

3) 우체국자기앞수표 등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 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를 확인(지급)한 때

4)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 고객으로부터 우체국에 현금인도가 이루어진 때

- 즉, 고객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을 넣고 입금을 위한 조작을 한 다음 기계가 입금을 나타내고 고객이 화면상의 확인버튼을 누른 때

5) 출장수납의 경우

가) 예금수령권한이 부여된 직원 : 그 직원이 현금을 수령한 때

- 따라서, 그 직원이 귀국 도중 수령한 현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하더라도 우체국은 고객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

나) 예금수령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직원 : 그 수령한 현금을 영업 점포에 가지고 와서 예금 수령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인도한 때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연구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다. 예금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률관계

1) 우체국의 주의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 ④)

예금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우체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에 의거 예금주의 예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나) 상당한(충분한) 주의의무 : 예금계약의 해약 등 성립된 예금계약에 미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래에서는 우체국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보다 한층 더 가중된 상당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참고판례 4] ≪대법원 선고 91다9244 판결(1992.2.14)≫

◈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참고판례 5] ≪대법원 선고 98다20059 판결(1998. 11. 10) ≫

◈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참고판례 6] ≪대법원 선고 98다20059 판결(1998. 11. 10) ≫

◈ 피씨(PC)뱅킹 서비스에는 자금이체와 같은 예금액 지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씨(PC)뱅킹에 의한 자금이체는 기계 또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예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변제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피씨(PC)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판례 7] ≪대법원 선고 2000다35597(2001. 1. 5)≫

◈ “은행이 거래인감의 분실, 변경 등 제사고신고의 접수는 ‘제신고 및 재발행의뢰서’에 서면으로 신고 받고 책임자가 재발행사유 및 정당성을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발행 또는 변경처리하고,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은행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 신고 된 예금주의 인감은 그 거래행위가 예금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은행의 위 규정은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인감이 변경되어 예금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법인격 있는 단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만이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변경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볼 경우 거래의 담당 책임자가 함부로 단체의 인감을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본다면, 예금주가 법인격 있는 단체이고, 구 인감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때에는, 그 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은행으로서는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케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고

2) 우체국의 면책

가) 면책 근거조항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규정(**민법 471조**) :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2조**) :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4)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제16조 면책범위)**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연구

제16조【면책범위】

①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예금주가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5항의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8] ≪대법원 선고 85다카880(1985.12.24)≫

◈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 한다.

[참고판례 9] ≪대법원 선고 2004다5389(2004. 4. 23)≫

◈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참고판례 10] ≪대법원 선고 2004다5389(2004. 4. 23)≫

◈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하여 소지한 자에게 그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통장과 함께 절취한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위 예금청구자는 예금주의 대리인 또는 사자가 아니고,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도 계출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원의 위 예금지급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1조)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 은행원이 육안으로도 가능한 위 두 인영의 상위구별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면 은행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례연구

A는 예금거래에 필요한 예금통장 및 인장 등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B가 2005. 2. 22. 11:40경 A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통장의 비밀번호가 원고의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임을 알아냈다. B는 2005. 2. 22. 12:49경 은행 남원지점을 찾아가 이 사건 통장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였고(제1예금인출), 이어서 전주로 이동하여 2005. 2. 22. 13:48경 상호불상 다방의 업주로 하여금 전주남문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제2예금인출), 다시 2005. 2. 22. 14:19경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전주충경로지점에서 현금 1,9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제3예금인출)

Q1.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은 유효한가?

Q2.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 따른 은행의 예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가?
Q3.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이나 제3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직원이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 외에 예금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참고판례 11] ≪광주고법 선고 2005나8902(2006.6.14)≫

◈ 원래 예금 잔고가 6,429만원이던 이 사건 통장에서 같은 날 2,500만원의 제1예금인출이 있은 후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2,000만원 및 1,900만원의 제2 및 제3의 예금인출이 차례로 행하여짐에 따라 하루 사이에 그 잔액이 299,000원밖에 남지 않게 된 점, 피고 은행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예금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점 창구직원이 차장 등의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 관한 한 예금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원고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 기한 금원의 교부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참고판례 12] ≪대법원 선고 2006다44791(2007.10.25)≫

◈ 제2예금인출이나 제3예금인출에 있어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 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하였으므로 앞서 본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그에 따른 예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예금인출이나 제3예금인출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의 직원이 단순히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원고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회사가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13] ≪대법원 선고 2000다38992(2002.6.14)≫

◈ [1]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 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

[3]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의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약 및 그에 대한 예금의 지급이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나) 채권계약인 예금계약의 성립으로 예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면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지급하여도 우체국이 면책할 수 있다.

(1) 예금주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한 거래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상속이나 강제집행에 의한 지급
(4) 양수인, 질권자에 의한 지급
(5) 국고귀속에 의한 지급
(6) 채권자가 이익을 받는 한도 내 지급 등

라. 우체국예금상품의 법적 특징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 우체국예금은 예금의 종류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소비임치계약

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계속적 계약의 성질상 입금과 출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매건 예입시마다 별개의 예금반환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입금 또는 출금이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하여 하나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므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의 입금 또는 출금이 있은 때로부터 매번 새로이 진행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4조【거래중지계좌】

우체국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 계좌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금주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할 때에는 우체국은 곧 거래재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 한다.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거치식예금

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거치식예금 약관 제1조 1항)으로, 기한부 소비임치계약

나)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 가능 (거치식예금 약관 제2조【지급시기】)

다) 실무상 예금주가 기한 전 청구를 하는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부득이한 사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도해지에 응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

- 기한의 이익을 포기 : 예금주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며 중도해지 요청하고, 우체국은 만기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에 응함

※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적립식예금

가) 적립식예금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적립식예금 약관 제1조 제1항)

나)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하지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점은 거치식 예금의 경우와 동일

4) 환매조건부채권

가) 환매조건부채권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 · 공채 등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나)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 공채 등 채권을 고객에게 매도하고, 고객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그 채권을 다시 우체국에 매도하기로 하는 유가증권매매계약

※ 환매조건부채권약관 제14조【양도 등의 제한】

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유증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예금계약의 상대방

가. 자연인의 거래 특징

1) 자연인(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자

※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누구나)

-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획득, 사망함으로써 상실
- 출생시점 :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 사망시점 : 심폐기능정지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개별적)

- 의사 무능력자 : 유아, 만취자, 정신질환자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획일적, 객관화)

<예금거래 상대방(자연인)의 유형>

행위능력자	성년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예외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가)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2) 예외적으로 태아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히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의 순위, 유증 등

민법 연구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나) 외국인의 행위능력

(1) 외국인의 행위능력은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며,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13조)

(2) 법률행위를 행한 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15조)

(3) 외국인의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며(국제사법 49조), 외국인의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50조) 따라서, 예금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인이 예치한 예금은 그의 본국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2013.07.01 개정) ※ 만19세 미만은 미성년자

(2)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 :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을 자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3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8조), 미성년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 제940조의6)이 있다.

(4) 민법 제5조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나)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다)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라) 대리행위(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마) 취소권(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바) 혼인(민법 제826조의 2 성년의제)

(사) 유언(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그 자격에서 행한 행위(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 책임사원)

(자) 임금청구(근로기준법 제68조)

민법 연구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 성년후견개시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9조 1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민법 제10조)

(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견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위 (나)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마)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한정후견개시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2조)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민법 제13조)

(가)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나)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위 (가)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라)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 2)

(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요약〉

내용 대상	요건	능력	후견인의 권한
피성년 후견인	1.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2.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1. 원칙 :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2. 예외 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② 일용품의 구입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1.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됨 2.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을 갖지 못하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짐
피한정 후견인	1.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2.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1. 원칙 :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2. 예외 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외의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② 일용품의 구입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1. 한정후견인은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짐 2.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대리권도 가짐 3. 위와 같은 범위에서는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
피특정 후견인	1.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2.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	피특정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도 피특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1. 특정후견인은 동의권과 취소권을 갖지 못함 2.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가짐 (이 한도에서는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

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

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4) 대리인과의 거래의 경우

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한 경우

(1) 본인이 발급하고, 거래사유발생일 이후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징구

- 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분 징구
-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 일치여부 확인

나) 대리권의 진정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1) 병원에 입원중인 예금주의 입원비에 대한 지급 요청

(가) 의식불명 등 경우

o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배우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처리

o 지급한도금액은 병원비를 한도로 하여 병원 등에 직접 병원비로 지급하거나, 병원비에 해당하는 예금만 출금하고 잔액은 동일한 예금에 송금 처리

- 가족 중 1인 청구시에는 병원으로 직접 송금만 가능

o 가족 중 1인이 정산 완료된 영수증으로 청구시 지급 불가

-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

(나) 의식이 있는 경우

o 예금주의 가족이라도 당연히 예금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o 예금주의 위임장을 받고 예금의 인출에 응해야 함

o 위임장의 진위여부는 병원의 방문 등 예금주 의사를 직접 확인

- 예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부부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다) 연고가 없는 예금주의 입원비를 사회복지사 등이 청구한 경우

- 해당 병원의 청구를 받아 병원으로 직접 송금

나. 법인과 거래 시의 유의사항

1) 법인이란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법인격(권리능력)이 주어진 것을 의미

- 권리능력 발생 : 설립 등기 시, 소멸 : 청산 사무 종결 시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의 실체 확인 : 법인은 그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되므로 법인의 실체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실명확인증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실체 확인을 해야 함

3) 법인의 권리행사 :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에 준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 시 등록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법인의 권리행사를 확인

다. 임의단체와 거래 시 유의사항

1) 단체 등록을 한 임의단체 **【예금주명 : 단체명】**

가) 세무서에 단체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 사단, 재단이나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

나) 예금거래

(1) 사단은 각종학회, 동문회, 협회, 종중, 교회, 노동조합 및 설립 중의 사단법인 등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거래

(2) 조합에는 법인 아닌 사단과 달리 대표기관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조합과의 예금계약은 전 조합원 공동명의로 하거나 또는「XX조합 대표조합원(또는 조합장) A」와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하여야 함.

(3) 각종 장학기금, 문화기금 등으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예금계약을 할 수 있음

2) 단체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 **【예금주 : 대표자(단체명 필수 부기)】**

가)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등 단체에 관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계좌를 개설한 단체

나) 금융회사는 단체서류를 제출한 단체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세법상에 대표자 개인의 자산과는 분리하여 전산등록 되도록 되어 있으나, 거래 시에는 단체서류 있는 단체와 같이 대표자를 통해 거래

3) 단체서류 없는 임의단체 **【예금주 : 대표자】**

가) 친목회 등 단순한 모임을 위해 몇몇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하고 특별히 고유번호 등을 부여받을 의사가 없이 구성한 단체

나) 계좌개설은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좌개설하고 계좌를 이용하며, 세법상으로도 대표자 개인의 자산에 합산 처리되고 있어 대표자

개인의 계좌와 같이 분류되어 거래

4) 예금주 명의의 표시방법

가) 가능한 회원규약과 회원명단 및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받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대표자(회장으로 지칭되는 것이 보통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대표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컨대 동창회의 경우에는「대표자명(00동창회)」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함이 원칙

※ 주의할 사항 : 단순히「○○동창회」라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서류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개인의 예금에 준하여 계좌개설

5)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 / 단체의 예금업무 처리

가) 공동대표예금

(1) 예금주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의 인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2) 상법 제208조에 공동대표에 의한 회사의 대표 선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 / 단체의 예금업무 처리지침을 별도 수립

나) 업무처리지침(우본 예금사업팀-1986, 2009.06.16)

(1) 가입대상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공동대표 명시, 등기부등본 확인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임의단체는 가입 불가

(2) 가입상품 : 보통예금, 듬뿍우대, 챔피언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3) 예금가입 : 공동대표 전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 방문 시 개설 가능

- 대표 1인 방문 시 다른 대표의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징구

(4) 예금지급은 1인에게 통장 지급거래가 가능하나 해약(중도해약 포함)은 공동대표 전원 방문 시에만 가능

(5) 현금카드는 1개만 발급가능(단, 수시입출식에 한함)

※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

- 공동대표 :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
-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여러명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 가능

· 통장개설은 법인명으로 하되 대표자 A, B, C 구분을 철저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

제2절 예금계약과 예금거래약관

약관의 필요성
- 금융회사의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과 대량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바, 금융회사가 거래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할 때마다 계약의 내용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고객의 입장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상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곤란함

⇒ 따라서 거래대상자의 계약내용을 구체적 합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약관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음.

1. 개 요

가. 예금거래약관 의의 : 예금주와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

나. 예금약관의 계약편입

1) 약관의 명시의무 : 약관 명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예금별 약관을 바인더로 만들어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약관의 교부의무 : 약관의 열람과는 별도로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고객이 원하면 해당 화일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중요내용 설명의무 : 이자의 지급시기·이자율 등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처리에 관한 사항, 무권리자에 대한 지급시의 면책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참고판례 15] ≪대법원 선고 2004다26171(2005.12.09≫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반대로 고객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 예금거래약관 해석의 원칙

1)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작성자 불리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에게는 불리하게,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제한적 해석의 원칙 : 약관가운데 금융회사에 유리한 면책약관 등의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한해석이나 축소 해석을 하여야 한다.

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5) 면책약관조항의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 :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을 유추·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의 책임을 면제·경감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6) 의외(意外)조항 배제의 원칙 : 거래의 외관상 형태에 비추어 약관의 내용이 심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약관의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7) 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의 내용이 위에서 열거한 해석원칙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이익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판례 16] ≪대법원 선고 2006다72093(2007.02.22≫

◈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7] ≪대법원 선고 98다20752(1998.10.23≫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8] ≪대법원 선고 2000다67235(2001.03.09≫

◈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가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주요내용 및 그 해설

가. **제2조【실명거래】**

①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해설

- o 실명확인 시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한다.
- o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다(개인사업자 코드 : 79이하, 90이상)

나.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 해설

- o 예금가입 거래 시 사용하는 통장 인감은 예금 지급 시 예금주 확인을 위한

장치로서 예금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예금주의 성명으로 된 인감을 사용토록 한다.

- o 통장 인감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부변경에 준하여 "등록/변경/해제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o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예금계좌를 해약하고자 하나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서를 징구하고 원부상의 인감을 서명으로 변경, 해약

다. **제6조【입 금】**

①예금주는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증서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②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해설

수표 등으로 입금 시 증서이면에 배서(이서)를 하는 부분은 증서 등의 부도 시 입금자에게 담보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금융실명법과도 연관이 있다.

라. **제9조【이 자】**

①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②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

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마.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예금주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해설

- o 예금주와의 예금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우체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발생되어 원칙적으로 예금주에 대해서만 예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 o 다만, 빈번한 예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준점유자에 의한 변제 규정에 의거 등록된 인감(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된다면 지급이 가능하다.
- o 적립식예금 :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에 의한 무통장해약 가능
- o 미성년자에 의한 예금 해약 시 단독해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부모 중 1인에 의한 해약일 때 각서 또는 지급동의서를 징구 후 해약

바.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사. **제13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우체국에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전화 등 유선 접수분의 효력은 익영업일까지만 인정되나 익영업일 이후까지 서면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접수국에서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으며 다른 권리자(자기앞수표의 경우 소지인)가 나타나 권리주장을 할 때 계좌 가입국에서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시행(2016.1.18. 시행)

-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아.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해설

- o 무여백 통장재발행 : 본인(또는 대표자)에 의한 거래 시에는 비밀번호 PIN-pad 입력생략(단, 대리인인 경우 비밀번호 입력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 o 분실(훼손) 통장재발행 : 개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법인/임의단체는 대리인 신청 가능

자. **제16조【면책범위】**

①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예금주가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해설

o 절취한 통장 및 인장에 의한 지급 : 민법 제470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통장을 지참하고 통장에 등록된 인감과 원부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음.

차.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카.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해설

o 소송 등에서 관련근거로 적용되는 우선순위는 **강행규정 → 개별약정 → 개별약관 → 기본약관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 상법 → 민법** 순으로 적용

o 그러므로 고객과의 예금계약이 성립되면 약관의 중요내용은 고객에게 안내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타. **제23조【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판례 19] ≪대법원 선고 96다19758(1996.09.1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참고판례 20] ≪대법원 선고 98다20059(1998.11.10≫

◈ 예금 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은행이 그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은행거래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고판례 21] ≪대법원 선고 2003다44370(2007.12.12≫

◈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제3절 예금계약과 금융실명거래

1. 금융실명거래

가. 금융실명제의 목적 :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나. 금융거래 및 금융자산의 정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다. 실명확인 의무

o '93.8.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된 이후 모든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함

o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

※ 금융실명거래의 실명확인은 계좌개설에 따른 절차 중심이며, 예금의 지급 및 해약 시에는 정당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면책

라. 실명확인증표

1) 개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

※ 실명확인증표의 구성요소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② 성명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③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실명확인증표 예시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여권번호화 같이 조립)
② 학 생 :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군 인 : 군운전면허증
④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⑥ 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⑦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⑧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발급)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 위·변조 위험이 높은 신분증(전역증, 휴가증, 장기하사관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급한 자격증

2)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사업자 성격코드 : 81 ~ 88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 성격코드 : 가운데 자리 79이하, 90이상)
- 동일금융회사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 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도 가능

3) 임의단체

가)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나)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 실명확인증표

- 고유번호 사업자 성격코드 : 80, 89

마. 실명확인자

1)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
2)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사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 할 수 없음.
3) 본부부서 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실명확인 가능
4) 임시사용인(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공제모집인 등)등은 실명확인 할 수 없음.

- 우체국 집배원, 보험FC 등은 실명확인 권한이 없음

바. 실명확인 생략 가능 거래(실명법 제3조의2)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만기계좌 재예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법원공탁금, 정부 · 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출금은 실명확인을 하여야 함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 매입 · 매도 거래

※ 외국통화의 송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실명확인 대상임

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1) 설명의무 이행

가) 단독 계좌 개설시 가입신청서와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징구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시 아래사항에 대해 설명·확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의 대리인**_____ (인·서명)

※ 정기예금 종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좌가입이므로 가입 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개별 징구 필요

나) 동일자에 동일인이 다수계좌 개설시에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설명이행 확인서 (다수계좌 개설용) 징구

❑ 설명·확인 서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의 대리인_____** (인·서명)

❑ 동시 개설 계좌내역 : 동일인이 동일자에 가입한 계좌 내역 기록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일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일

---

2. 신규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국가 간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FATCA, CRS)에 따른 신규계좌 개설시 이행사항

o 조세목적상 **미국인 여부(FATCA)**, **미국 외 해외거주자 여부(CRS)** 확인

- 대상 : 2016년 1월 이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
- 검토서류 : 가입선청서 및 본인확인기록에 기재된 정보

o 본인확인서 징구

- **개인·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및 본인확인기록 확인 후 **한국이 유일한 조세 목적상 거주지가 아닐 경우** 본인확인서 징구

※ 2016.1.1.이후 최초 거래한 신규계약자가 다시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서 징구 생략 가능

- **법인·단체 : 모든 법인과 단체는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서 수취**

<본인확인서 주요내용>

o 본인확인기록을 계좌개설 서류의 일부로 수취
o 계좌 개설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확인기록의 합리성을 확인
o 본인확인기록을 통해 한국이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자임을 확인할 경우 별도로 본인확인서(본인확인기록 외의 정보) 수취 금지
o 본인확인서를 신뢰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제출한 본인확인서에 의존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세무자문 제공 또는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판정하기 위한 법적분석을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음

o 기타

- **본인확인서 미제출시** : 본인확인서 작성요청에도 고객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보가 발견된 국가의 보고대상 거주자로 취급
- **MCAA 미체결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수집** : 이행규정에서 MCAA 체결국가 추가 시, 기존계좌를 재실사해야 하는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MCAA 미체결국 거주자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함

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예금가입 실명확인 시 유의사항

1)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 또는 기타 개인 실명확인증표
가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계좌 개설당시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된 것만 유효)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의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대리인의 위임장 : 위임장은 원본,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명의인)이 발급받은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해야 함

-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불가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위임장에 수임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에 의한 실명확인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2) 미성년자

가) 미성년자 기준 : 만19세

나) 예금가입 및 실명확인은 개인과 동일함.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시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명거래 불가

다) 전자금융 약정의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약정 가능 (만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단독 약정 가능)

라) 체크카드발급

(1) 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 단독발급 가능

(2) 만 14세 ~ 18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만14세 미만은 발급불가)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체크카드 발급 가능(만14세 ~ 만19세)

마) 미성년자 본인 단독 예금해약 불가(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 계좌 해약 시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친권자)	법정대리인(후견인)
○ 신청인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친권확인 시) ○ 각서 또는 지급동의서(부모 중 1인 방문 시) ○ 통장 및 인감 ※ 서명통장의 경우 미성년자 동행	○ 신청인 실명확인 증표)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통장 및 인감

※ 100만원 초과 미성년자 명의예금의 지급(만기/해약) 시 가족 모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와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를 필수로 징구

<미성년자 계좌 해약 시 구비서류>

<table>
<tr><th colspan="2" rowspan="3">거래
구분</th><th colspan="3">징 구 서 류</th><th rowspan="3">비 고</th></tr>
<tr><th colspan="2">미성년자 본인</th><th rowspan="2">친권자</th><th rowspan="2">후견인</th></tr>
<tr><th>만 14세 미만</th><th>만 14세 이상</th></tr>
<tr><td colspan="2">예금
가입</td><td>1.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등)
2.인감
3.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법정대리인의 계좌개설 동의서
* 서명거래 불가</td><td>1.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등)
2. 인감</td><td>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확인서류
3. 인감

【가족 가입 시】
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확인서류
3. 인감
4. 법정대리인의 계좌개설 동의서(14세 미만)</td><td>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후견인 확인서류
4. 인감</td><td>* 가족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표시된 구 의료보험증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td></tr>
<tr><td rowspan="2">예금
해약
(중도
해지
포함)</td><td>100만원이하</td><td>불가</td><td>불가</td><td>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단, 친권 확인 시)
4. 각서
(단, 부모 중 1인 방문 시)
5. 통장, 인감</td><td>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통장, 인감</td><td>* 정기예금, 적금 상품에 한함 (요구불계좌 해약은 만 14세이상 단독으로 가능함)

* 서명으로 가입된 예금해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반드시 함께 거래하여야 함</td></tr>
<tr><td>100만원초과</td><td>불가</td><td>불가</td><td>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지급동의서
(단 부모 중 1인 방문 시)
5. 통장, 인감</td><td>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통장, 인감</td></tr>
<tr><td colspan="2">통장,
인감
분실
재발행</td><td>불가</td><td>1.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법정대리인 동의서</td><td>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통장, 인감</td><td>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통장, 인감</td><td>대리인 거래 불가</td></tr>
</table>

비밀 번호 변경	불가	불가	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통장, 인감	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통장, 인감	대리인 거래 불가
M/S 자기 인자	불가	1. 실명확인증표(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2. 통장, 인감 * 비밀번호 확인	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통장, 인감	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통장, 인감	* 비밀번호 확인 (대리인 거래 시)
자동화기 기 약정	불가	1. 실명확인증표(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통장, 인감	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통장, 인감	대리인 거래 불가
현금 카드 발급	불가	1.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4. 통장, 인감	1. 후견인의 실명확인증표 2.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3. 후견인 확인서류 4.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5. 통장, 인감	대리인 거래 불가

※ 후견인 확인서류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에 표기되었을 경우 기본증명서로 갈음하고,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판결문 등 후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추가 징구

※ 친권자/후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사실 확인서류를 추가 징구하여야 함

※ 위임사실 확인서류 :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위임내용 구체적 작성), 위임장(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3) 종업원 · 학생 등의 일괄 계좌 개설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종업원	사업주	○사업주가 실명확인 하여 제출한 서류 ※ 일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 -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부담으로 납입하는 경우 -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 종업원의 계좌에 이체하기 위한 경우 - 일괄개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서류
학교	학교장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일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 -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교학생 - 일괄개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서류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	부대장 경찰서장교도소장	○ 해당기관 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일괄개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서류

※ 계좌 일괄 개설과 관련 사업주가 실명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명확인 서류와 함께 반드시 명의인 전원의 서면동의서가 포함 되어야하고 최초 거래 시 명의인 개별 2차 실명확인이 필요

4) 재외동포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본 인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여권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대리인 (영사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영사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사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
	가 족	• 신청인의 실명확인 증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족관계가 확인된 서류에 한함)	신청인의 실명화인증표 사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원본 또는 사본

5) 외국인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 방법	보관서류
외국인	본 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 발급운전면허증 ※ 투자등록증(증권거래시), 외국인투자신고 수리서.인가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가 족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족관계가 확인된 서류에 한함)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원본 또는 사본

※ 외국인, 국적상실자의 대리인 거래에 따른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확인서류로 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o 2007.7.14. 발효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 (2013.11월 기준)
o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o 우리나라의 아포스티유 확인기관 : 외교통상부, 법무부
o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① 정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급한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무부, 법무부 등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
②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해 공증인 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계약서 등 일반문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일반문서는 번역 및 공증절차를 거친 후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

6)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자격

가)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발행

나)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는 경우 발행

※ 발행기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2015. 1.22.)→ 국내거소신고증(2016.6월 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실명확인증표 내 유효기간 표시>

실명확인증표 종류	발급 자격	체류기간(유효기간) 표시 여부
외국인 등록증 (영주 F-5 체류자격)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영주 F-5외 체류자격)	외교, 공무, 투자, 유학, 취재 등 사유로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자	○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

※ 진위여부 확인(거래코드 : 3023)

- 대상 : 외국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7) 외국인 / 재외동포 예금 가입 시 유의사항

가) 여권만으로 통장개설 요청 시 : 예금계좌 개설만 가능

- 비대면 거래 불가 : 전자금융약정, 자동화기기이용, 체크카드발급

나) 여권과 함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고 통장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 약정, 체크카드 발급 등 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다) 외국인 통장개설 시 인감이 아닌 서명거래만 허용

- 외국인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 시 대리인 거래 제한

나.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 포함) 예금가입 실명확인 시 유의사항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방법	보관서류
법인	대표자	<법인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실명확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중 하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용인감계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관계 확인서류 원본(사원증의 경우 사본)

※ 사용인감계 최초 신청(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

※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거래 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가능

※ 폐업 후 해산하기 전 법인의 통장개설시에는 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로 실명 확인

□ 공동대표 · 각자대표

구분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공동대표	•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표기 - 대표자 전원의 실명확인 후 신규거래 예)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공동대표이사 고길동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전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각각의 대표자 위임서류 전부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각자대표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여러명 나열하여 표기 - 대표자 중 1인의 실명확인 후 신규거래 예)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고길동	일반 법인의 거래와 동일하게취급 - 대표자1인이 법인에 대한 대표권행사 가능

다. 임의단체 예금가입 실명확인 시 유의사항

1)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된 임의단체 **【명의 : 단체명】**

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2) 단체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 **【명의 : 대표자명(단체명 부기 필수】**

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1)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증표

(2) 확인서류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조직구성원 명부

※ 단체서류 미제출시 대표자 개인예금으로 취급되므로 연체발생 등의 경우 압류 등 법적조치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

3) 단체서류가 없는 경우 **【명의 : 대표자 개인 명의로만 가능】**

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4) 임의단체 대표자의 변경

가) 임의단체 대표자 사망시나 변경 시 대표자 정보 변경 필수

- 신 대표자로 임의단체 고객등록 후 1962(실명변경) 거래 실시

나)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구비 서류

(1) 신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구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X)

(2)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3)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성원 명부

(4) 단체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이 서명날인 한 확인서

- 임의단체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해약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 변경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 구분>

예금주	대 상	거래명칭(CIF등록)	과세구분	비 고
개인	순수 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개인과세	
	외국인, 재외동포	성명 + 외국인 등록번호(국내 거소신고 번호, 여권번호)	개인과세 (제한세율)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구분코드> 개인사업자 - 개인면세사업자 : 90~99 - 개인과세사업자 : 01~79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과세	필요시 성명 옆에 상호 부기 가능
법인	- 영리법인 본사 : 81, 86, 87, 88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과세	금융보험업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 비영리법인의 본사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포함) : 82		법인과세(정부관리기금은 원천징수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83		원천징수 면제	
	- 외국법인의 본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법인과세	
	- 영리법인 지점 : 85		법인과세	
임의단체	-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80, 89	단체명 + 고유(납세)번호	개인과세	
	-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단체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의 성명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시 성명 옆에 임의단체명 부기가능

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거래 비밀보장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비밀보장의 법률상의 의무이며, 예금잔액 조회에 있어서도 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 금융회사 종사자 :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 예금잔액조회 : ARS만 가능(2014.5.14.), 우체국을 통한 전화조회 불가

2) 비밀보장의 내용
   가) 금융정보의 제공 및 누설금지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금융거래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정보제공의 요구금지 : 누구든지 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3) 비밀보장 대상정보· 자료의 범위(시행령 제6조)

가) 금융거래 사실(누가, 어느 금융회사,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여부

나)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자료)

다)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정보)

라) 당해 정보만으로 명의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 대상이 됨

-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

①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통계자료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③ '93.8.12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

④ 순수한 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⑤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서비스, 기타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④⑤의 경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나. 금융거래의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1) 금융실명거래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실명법 제4조1항)

구 분	근거	요구대상 금융회사	정보제공가능범위	목적·용도
본인의 동의	법§ 4①	·각 영업점 ·본점전산실 ※일괄조회가능	·거래자의 동의내용에 따라 제공 가능 ※ 서면동의	특별한 제한 없음
법원의 제출명령 · 법관 영장	법§ 4①1.	· 각 영업점 · 본점 전산실 ※ 일괄 조회가능	·영장에 따라 정보제공가능(특정 계좌와 연결된 직전·직후의 계좌 정보제공 가능) ※ 서면으로 요구	·조사목적에 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정보요구 가능
세무관서장	법§ 4①2.	· 각 영업점	·인적사항이 명시된 자의 계좌 개설자료 ·위 계좌에 입출금된 내용 및 직전·직후 연결계좌번호 ※ 서면으로 요구 ※ 연결계좌에 대한 추가자료는 거래 금융회사에 별도의 정보요구절차가 필요	·과세목적에 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요구 가능
	법§ 4②	· 본점 전산실 ※ 일괄 조회가능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지방세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법§ 4②	· 본점 전산실 ※ 일괄 조회가능	·인적사항이 명시된 자의 계좌 개설자료 ·위 계좌에 입출금된 내용 및 직전·직후 연결계좌번호 ※ 서면으로 요구 ※ 연결계좌에 대한 추가 자료는 거래 금융회사에 별도의 정보요구절차가 필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요구 가능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장 · 예금보험 공사사장	법§ 4①4.	· 각 영업점	·인적사항이 명시된 자의 계좌 개설자료 ·위 계좌에 입출금된 내용 및 직전·직후 연결계좌번호 ※ 서면으로 요구 ※ 금융 감독 기관장 명의로 요구 ※ 연결계좌에 대한 추가 자료는 거래 금융회사에 별도의 정보요구절차가 필요	· 감독·검사목적에 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 요구 가능

2)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구 분	근 거	요구방법 및 제공범위	목적·용도
감사원	감사원법 제27조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요구 ※감사원장·감사반장 명의로 요구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제52조	·금융회사의 장에게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선거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항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요구	·대규모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	·국세청장 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는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보고 받은 사항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	·금융회사 직원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수수한 재산이 마약관련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때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불법 수익등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제21조	·금융회사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명법과 타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이외에도 명의인 동의에 의한 타법률 정보제공 요구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또는 공문 형태의 시행령 문서) 와 명의인의 개별 동의서 징구시 정보제공 가능

3)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의 사례의 예외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법인 으로부터 특정 법인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시 이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적으로 응할 수 없음

(2) 단, 회계법인이 특정법인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시에는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요청(서면 요청 포함)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목적 범위내에서 법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 가능

(명의인 앞 통보 및 기록관리 생략)

① 특정법인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② 은행조회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인감증명서

나) 자필서명 및 무인에 의한 동의서의 범위 : 명의인이 직접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정보제공요구서 + 동의서)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

다. 정보제공사실의 기록 · 관리 의무(실명법 제4조의3)

★ 기록관리 목적 : 정보제공 등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정보제공이나 유출 방지

1) 금융회사가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기록대상 여부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참조>

3) 보관기간 :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

라.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실명법 제4조의 2)

1)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또는 실명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대상 여부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참조>

※ 명의인 앞 통보대상에 한하여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비용을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에 징수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관련)

- 징수할 금액 : 예금가입자(명의인) 당 2,000원
- 징수수수료 처리 : 금융영업수익으로 세입처리

※ 국세청(본청, 센터 조회건만), 검찰청, 경찰청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우체국의 정보제공 보고에 의거 매반기 해당기관으로 수수료 납부요구(후납)

3) 통보유예 요청

가) 통보유예요청 사유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증인위협,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방해우려,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

(3)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o 통보유예기간 : 통보유예요청 사유별 표 참조

o 명의인 앞 정보제공 사실통보 :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과 통보유예사유 통보

<통보유예 요청기간>

구 분	최초 요청시	반복요청 기간	반복 회수	최장 기일
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매회 3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② 증거인멸·증인위협,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방해 우려,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의 사유	6월	매회 3월	2회	12월
③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6월	매회 6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금융정보 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구 분	특정점포 기재여부	정보제공 기 록 부	명의인 앞 통보
1. 명의인이 요청하는 경우 (명의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정확한 요구정보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위임장 및 본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필수 첨부	×	×	×
2. 명의인의 서면 상 동의서를 제출하여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 동의서 기재 내용 확인	×	○	○
3. 법원, 경찰청 등에서 영장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서류검증, 문서송부촉탁서 등 포함) ※ 제출서류를 표준양식에 준하여 처리 가능(FAX 가능)	×	○	○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관관서의 장 : 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 지급조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 - 부동산거래관련 및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자료요구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구	○ - × ×	○ × ○ ○	○ × ○ ○
5.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	○
6. 금융당국 및 감독기구(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에서 감독검사 및 협약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x	○
7. 동일금융회사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	×	×	×
8. 감사원법 제27조에 의한 요구	○	○	○
9.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한 요구	×	○	○
10. 정치자금법 제17조에 의한 요구	x	x	x
11.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한 요구	×	○	○
12. 상속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한 요구	×	○	○
13.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한 경우	×	○	○
1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요구	x	○	x
1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요구	×	○	○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의한 요구	×	x	x
~	~	~	~
o 정보제공요청 받았으나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	○	×
o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여부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당좌,가계당좌)	×	×	×
o 어음·수표의 발행인(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 포함), 무통장·타행환입금내역등에 관한 정보를 명의인 이외의 자가 정보제공요청을 한 경우(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수표 : 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 무통장입금·타행환송금 : 입금의뢰인 (송금인)에게 통보 ※ 통보 금융회사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생략 가능	-	○	○

- 특정점포 기재 여부 : 정보제공 요구자의 공문에 해당영업점명이 기재되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 으로 표시함
-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보제공기록부에 기록 관리는 하되 명의인 앞 통보는 생략
- 명의인 앞 정보제공사실 통보 : 정보 등을 제공한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마. 금융거래 비밀보장과 관련한 유의사항

1)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 거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③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가) 금융회사는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

나) 부당한 정보요구

(1)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2)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가) 표준양식에는 ①명의인의 인적사항 ②요구대상거래기간 ③요구의 법적근거 ④사용목적 ⑤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⑥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표준양식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의 서식

(3) 정보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4) 누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요 구 자	근 무 부 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 용 목 적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통보유예*	유 예 기 간		
	유 예 사 유		
특이사항*			

요구기관 기관장 ㊞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 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제출명령>

○○ 지방법원
제 ○ 민사부
제출명령

○○은행 ○○○지점장 귀하

사 건 2002가합○○○○○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주 : ○○지방법원, 제○민사부, 제출명령, ○○은행 ○○○지점장, 원고, 피고,'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는 예시이므로 달라질 수 있음
(예 : ○○고등법원, 제○형사부, 재산조회명령, ○○증권 대표이사, 채권자, 채무자,'아래와 같이 명의인에 대한 재산조회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재판장 판사 ○○○ ㊞

<압수수색검증영장>

압 수 수 색 검 증 영 장

[금융계좌 추적용]　　○ ○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		
	주 거				
청 구 검 사			변 호 인		
압수, 수색, 검증을 요 하 는 사 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 효 기 간	20 . . . 까지	
대 상 계 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거래기간				
	법적근거				
	사용목적				
	거래정보 등의내용				
압수, 수색, 검증할 장 소·물 건 등					
일 부 기 각 및 기 각 의 취 지	☐ 대상계좌 ☐ 물건 ☐ 장소 ☐기타 ( )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 . .

판 사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통 보 유 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집 행 불 능 사 유			
처 리 자 의 소 속 관 서, 관 직		처 리 자 기 명 날 인	

형소 215, 219, 114, 형소규 109, 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①,동법시행령 10
주 : 1. 계좌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별지에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를 간략히 표시한다.
2.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사례연구

Q. 부당한 정보제공의 예시?

A. 2011년 3월 2일자 우체국의 1천만원 이상 출금거래 내역
→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보제공 불가

☞ 참고사항

○ 「성명」만을 기재하고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당해 성명의 거래자가 하나인 경우는 인적사항으로 간주
- 동일 성명의 거래자가 여러 명 있어 누구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정보로 간주

○ 「특정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거래자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특정 계좌번호에 의하여 거래자가 특정되므로 인적사항으로 간주

2)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업무별 사례

가)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1)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관련 정보제공

(가)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정보 제공하는 경우

- 입금의뢰인(송금인)의 성명/연락처만 제공 가능(계좌번호, 실명확인증표 등 제공 불가)
- 입금자원 중 수표로 입금된 내역(수표발행은행, 수표번호 등)은 정보제공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의 요청 시 전표 상에 기록된 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만 정보제공 가능

※ 후원회의 입금의뢰인 성명과 연락처 요청 시 제공 의무 있음(정치자금법 제17조 제13항)

(나) 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정보 제공하는 경우

- 입금계좌 예금주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불가
-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 또는 무통장입금증 재발행 가능

(2) ARS(1588-1900)로 송금(잔액)조회 등을 요청하는 경우

o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3) 상속인,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권한 여부를 확인 함

(가) 상속인 앞 정보제공 : 상속인중 1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제공 가능

※ 상속인 1인 앞 정보제공 시에는 금융회사에서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제1종 사고등록"을 실시하여 예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나) 상속인의 동의로 제3자 앞 정보제공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나)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 예시

(1) 수표 관계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가) 발행인(의뢰인) :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가능

(나) 최종소지인 : 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만 제공가능

구 분		내 용
자기앞수표 관련인	발행의뢰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 가능(수표 앞면 사본만 제공 가능)
	최종소지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제공 가능 (수표 앞뒷면 사본 제공 가능)
	부도수표 소지인이 사고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전화요청 포함)	사고신고서상에 기재된 정보는 제공 가능 (사고신고 그 자체는 금융거래가 아님) ※ 유의 : 사고신고인과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음
	사고신고인에게는 수표지급제시인 또는 수표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은 정보 제공할 수 없음	

약속어음 · 당좌수표 · 가계수표 관련인	발행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어음.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 제공 가능 (어음.수표 사본 제공 가능)
	최종소지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배서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 약속어음 : 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에 나타난 정보 제공가능(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 사본만 제공 가능) - 수표 : 정보 제공 불가
약속어음 · 당좌수표 · 가계수표 소지인 요구시	거래처(발행인)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 어음.수표 소지인의 요청(전화 등에 의한 요청 포함)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정보 제공 가능 •당좌(가계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여부 및 내용 •예금주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
	거래처(발행인)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어음.수표 소지인이 예금개설점에 직접 내점 하거나 전화 등으로 어음.수표의 번호, 발행인을 알린 경우에 다음 사항의 정보제공 가능 •당좌(가계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계좌폐쇄 등) •부도발생 여부
	부도가 확인된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발행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 가능 - 부도내용(부도금액, 부도시기 등)

(다) 부도처리 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사고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전화요청 포함)

- 사고신고서 상에 기재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음(사고신고 그 자체는 금융거래가 아님)

※ 사고신고인과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음

- 사고신고인에게 수표지급제시인 또는 수표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은 정보제공 할 수 없음

(2) 수사기관의장 또는 검사가 문서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CCTV화면의 재생을 요구하는 경우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제공가능(CCTV는 금융거래정보가 아님)

3)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 분			
		기 관		개 인	
		1차	2차	임 원	직 원
금융실명법 및 동법 시행령 전반	법 제5조의2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좌항 1,2번 미이행 - 좌항 3번 기관경고 3회	1. 해임 2.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1. 면직 2. 6개월 이내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나) 벌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비 고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위반 (차명거래, 알선중재 위반)	법 제6조 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가능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 위반 (비밀보장 위반)	법 제6조 제1항		

다) 과태료 부과대상

(1) 금융실명거래(실명법 제3조) 위반

(2) 명의인 앞 통보(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5항) 위반

(3) 거래정보제공내용 기록·관리(실명법 제4조의3)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0만원
다.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만원
라.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만원
마.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 등	법 제8조	1,000만원

제4절 예금계약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예금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체국이 예금주의 해약청구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멸의 종류로는 해약, 국고귀속, 상계, 변제, 공탁에 의한 소멸이 있음

※ 변제는 예금계약의 소멸이 아니라 예금의 소멸임.

2. 예금의 해약

가. 해약의 의의 및 절차

1) 예금원부의 전액을 인출하고 폐쇄하는 것
2)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증명에 의한 정당본인임을 확인하고, 제사고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제한 후에 해약거래를 할 수 있음
3)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전화 확인 후 대리인에 의한 해약처리가 가능(2000.9.2.)

3. 예금의 지급

가. 지급의 종류

예금의 지급이란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서에 의한 지급, 계좌대월에 의한 지급, 현금자동화기기에 의한 지급 등이 있음

1) 청구서에 의한 지급 : 창구지급, 부도지급, 무통장지급
2) 계좌대월에 의한 지급 : 현금지급, 추심지급, 교환지급
3) 현금자동화기기에 의한 지급 : 무통장 · 무카드지급, 카드지급, 통장지급

나. 예금지급 시 확인사항

1) 인감·서명의 진위확인

가) 확인방법

o 평면대조 방법 : 예금거래용으로 신고 된 인감이나 서명감과 예금증서나 예금청구서 등의 인영이나 서명 필적을 평면에 나란히 놓고 그 일치여부를 육안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여기고"라고 함으로써 평면대조방법을 원칙적인 인영, 서명 필적의 진위확인 방법으로 채택

나) 인감 · 서명 대조의 정도

(1) 인감이나 서명감을 신고 받아 거래하는 경우 신고 된 인감과 예금증서나 예금청구서 등의 서명필적을 어느 정도 대조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 제1항은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 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2)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 대조" 한다는 것은 일상 업무로서 예금을 지급하는 우체국담당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대조하는 것을 의미

2) 통장 · 증서 등의 위조 · 변조 여부 확인 : 통장식 또는 증서식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예금통장(예금청구서 포함)과 예금증서의 자체 또는 그 기재내용이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

3) 비밀번호 분실 시 확인 : 고객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거래 실시

4) 사고 변경사항 신고의 유무 : 예금거래처로부터 사고·변경 사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예금이 무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

5) 지급제한 등의 유무 확인 :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예금거래처에게 예금의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함.

6) 기타 이상 유무 확인 : 예금청구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 예금주에게 전화조회 등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지급과 면책

가. 면책근거

1) 법정면책사유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471조).

다)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규정

민법은 변제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조건하에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는 바, 표현 수령권자라 함은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를 말함

2) 약정면책사유

가) 면책약관의 필요성

(1) 민법의 변제자 보호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예금의 지급을 일상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의 예금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게 하는데 부족함.

(2) 따라서, 금융회사는 예금지급 시 확인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특별약정을 두고 있음.

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과 면책약관의 관계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이나 면책약관이나 모두 무권리자에게 변제한 변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은 동일함.

(2) 면책약관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임.

다) 면책근거의 적용 순위

(1) 금융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면책근거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면책약관 두가지는 면책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적용하여야 함.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나. 면책근거의 적용

1) 우체국의 예금지급 등이 면책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가) 면책약관에 의해, 아니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에 의해 무권리자에게 예금을 지급
※ 우체국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예금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
나) 예금주는 부정한 예금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반환 받거나, 때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2) 우체국의 예금지급 등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가) 우체국의 예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예금주가 지급 청구를 하면 이중 지급을 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부정한 예금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함

다. 예금의 편의지급과 면책

1) 편의지급의 의의 : 금융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금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장이나 인감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함.
2) 편의지급의 면책 여부 : 판례에 의하면 편의지급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 근거로도 또한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무권리자에게 예금지급을 하였다면 면책되지 못함.
3) 편의지급 시 유의사항 : 편의지급의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로도 면책되지 못하여 금융회사의 위험부담 하에 지급 하는 것으로, 부득이 편의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가) 예금주 본인에게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예금주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편의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본인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전화는 우체국 직원이

직접 걸어야 하며, 걸려온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나) 편의지급 신청서 자필작성 :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삼기 위하여 본인의 편의 지급 요청사유 등을 자필로 기록 하도록 함

다) 철저한 사후보완 : 편의지급을 한 후에는 예금주에게 가능한 빨리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재발행 된 통장에 의한 예금지급과 면책

1) 변경 신고 있는 예금의 지급

가) 기명식예금의 예금증서나 예금통장 및 신고인감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금에 관하여 선의 취득자가 생길 수 없음.

나) 따라서 진정한 예금주의 분실·도난·신고에 따라 새로운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또 인감 변경신고를 받아 예금을 지급하면 됨.

5. 예금의 공탁

가. 공탁의 개념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금전 · 유가증권 · 기타)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

2)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소송발생 위험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

나. 공탁의 종류(우체국예금 관련)

1) 변제공탁
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나) 상속예금 분할지급, 소유권분쟁 등에 변제공탁 이용
2)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합 등에 집행공탁 이용

다. 공탁업무 처리절차

1) 상속예금의 분할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변제공탁)
가) 공탁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예금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
(1)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초과시 법무사에게 공탁업무를 위임하고 공탁소요비용은 상속예금에서 처리
(2)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1인의 단독 청구 시 책임 변제각서 징구 후 지급가능
나) 공탁 신청 절차
(1) 공탁서 작성(공탁서 2통, 상속인 확인서류, 공탁통지서, 위임장) → 공탁신청(법원 공탁계) → 법원 수리결정 → 공탁물 납입(지정 금융회사로 예금 입금) → 공탁서 발급 → 상속예금 분할지급 종결(예금 변제의 효력)
(2) 공탁 비용은 예금주의 사정이 원인인 경우 예금주의 비용으로 처리
(가) 상속인 확인서류 발급비용, 공탁비용, 법무사 비용 등
(나)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서 제외하고

공탁 금액 신고

※ 상속예금 분할지급 요청 시 상속인에게 공탁비용을 안내하고 상속예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분할지급 실시

다) 공탁 비용

(1) 공탁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예금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 : 법무사에게 공탁업무를 위임하고 공탁 소요비용은 예금에서 비용 처리

(2) 소유권 분쟁중인 예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변제공탁)

(가) 소유권 분쟁 예금 지급 요청 시 법원의 판결 등 소유권 확정 이후에 지급 요청해야 함을 안내

(나) 분쟁 당사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공탁해야 함을 설명

(다) 각 우정청 지정법무사에게 공탁업무를 위임하고 분쟁예금에서 비용 처리

(3) 압류경합 된 예금의 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집행공탁)

(가) 압류가 경합된 예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공탁해야 함을 안내

(나) 현재 집행공탁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압류팀에서 일괄처리

(다) 공탁 신청 절차 : 공탁 신청서 작성(공탁서 2통, 공탁사유서, 위임장 작성) → 공탁 신청(법원 공탁계) → 법원 수리결정 → 공탁물 납입(지정 금융회사로 예금 입금) → 공탁서 발급 → 공탁서·공탁사유신고서 민사신청과에 접수 → 압류 경합에 의한 예금지급 종료

사례연구

Q 임의 단체의 신·구 대표자가 서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탁여부?

A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 등을 통해 분쟁종결 후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 된 후 지급해야함을 안내하고, 지급요청 민원이 커지거나 우체국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

6. 예금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제도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나. 우체국예금의 소멸시효

1)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예입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또는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교부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
2) 위의 최고를 한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연구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상법 연구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시효완성 예금의 지급

1)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시행 : 소극적 지급에서 적극적 지급으로 전환

2) 지급절차 : ①우체국창구에서 본인확인 → ②휴면계좌통합조회로 정보조회 → ③국고귀속금 지급(비밀번호 생략) → ④우정사업정보센터 문서통보 불요

※ 실효계좌조회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 가능('16.3월 대국민서비스 개시 예정)

제2장 예금채권의 지급 · 이전

제1절 예금채권의 지급

1. 예금주에 대한 지급

가. 원칙 : 우체국이 예금주(명의자)와 출연자(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금융실명제에 따라 예금주(명의자)에게 예금을 지급

※ 우체국이 예금주(명의자) · 출연자(실제소유자)와의 약정으로 출연자(실제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서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제소유자에게 지급 가능

판례연구

※ 대법원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례변경) 판결(2009.3.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 금융회사와 출연자 등과 상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2.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

가.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지정된 권한이 있는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함

1) 점유란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 같은 보호를 부여

2) 민법 제210조(준점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 준점유자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변제자 보호

3. 대리인에 대한 지급

가.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써 채무가 소멸

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

1)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필수 징구

2)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

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

1)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는 경우,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인을 위한 지급

가.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나.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민법 제472조)
다. 우체국에서는 병원비 지급(영수증 첨부), 간병비(영수증 필수 첨부)에 대해서 인정

5. 무능력자에 대한 지급(의사무능력 / 행위무능력)

가. 의사무능력
1)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함으로써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또는 판단능력
2) **의사무능력자** : 유아(젖먹이), 만취자, 정신질환자 등이 대표적이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3) 효력 :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사례 : 만취 중에 자기 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그러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잃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나. 제한 능력(행위무능력)

1) 행위능력 :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민법은 만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

- 만19세가 되더라도 후견제도가 개시된 경우 행위능력이 없음
- 행위능력 여부의 판단은 만19세,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심판 등 획일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함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입증이 없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3) 범위 :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적용

6.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가. (원칙)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일부 법률행위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 인정

나. 미성년자의 예금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1) 법정대리인에게는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음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민법 제6조)

3)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 후견인의 순서로 적용

7. 오송금된 예금의 지급

가. 송금의뢰인이 오송금된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

※ 예금주는 오송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지급 · 처분권한을 취득

나. 예금주가 반환을 거절할 경우 오송금한 송금의뢰인은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예금을 반환받아야 함

8. 임의단체에 대한 지급

가. 임의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

나. 단체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만 거래

제2절 예금주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

1. 예금의 상속

가.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민법 제1005조)

- 단, 일신에 전속(피상속인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음

나. 상속예금의 성질 및 존재이유

1) 상속예금의 성질 :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그 예금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되므로 유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상태가 됨

※ 공동소유 재산

o 공유 :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음(각 공유자가 수익권능과 관리권능 보유)
o 합유 : 개개인의 지분은 인정, 지분 처분은 제한됨(합유자 전원의 동의필요)
o 총유 : 사용권만 있으며 지분이 없음

2) 상속제도 존재 이유 : ① 상속인의 생활보장 ②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승계 ③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실현

다. 상속의 개시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 실종선고, 인정사망도 포함, 사망신고를 한 시점에 개시되는 것이 아님

민법 연구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	인정사망
민법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생사불명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사고발생
가정법원의 선고	관공서의 보고에 의한 사망기재
사망간주	사망의 강한 추정력

※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 대습상속은 가능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라. 상속의 발생 및 상속인의 확인

1)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 통상의 예금지급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요구불예금은 예금증서나 통장과 신고인감에 합치하는 인영과 비밀번호가 있는 지급청구서(찾으실 때) 등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면, 우체국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그 지급은 유효하고 우체국은 면책

나) 그러나 당해 우체국의 예금실무담당자가 조문한 바 있는 경우나 사망통지를 받고서 이를 망각하였다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언론보도 등에 의한 인지) 우체국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때는 주의의무가 가중

2)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가) 사망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우선 당해 예금에 대하여 제1종 사고등록(3031거래)을 하여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이때 예금 이외의 거래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업무처리 (카드, 계좌대월, 자동이체 등)

3)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조회서비스 요청 시 업무처리

가)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거래정보조회 요청

- 현재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접수

나)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로 정보조회 리스트를 발송하며 우체국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지원담당부서에서 리스트 수령 후 일괄 사망자 등록

다)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후 상속인의 휴대폰 SMS, e-mail로 조회결과 통보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 조회결과 게시(휴대폰 및 e-mail이 없을 경우 우편 통보)

Tip. 지자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2015.6.30.)

o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

- 사망신고와 동시신청도 가능

o 신청기관

-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2016.2.15. 전국으로 확대)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통합조회대상

①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포함) ②토지내역 ③자동차내역
④국민연금 가입유무 ⑤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⑥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o 신청자격

-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

· 단, 선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후 순위자가 신청 가능

마. 상속예금의 업무절차

1) 상속인의 범위 확인(민법 제1000조)(민법 제 1003조)

가) 법정상속 순위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3)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 자매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나) 상속순위 해설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

(2) 제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한 경우), 남자, 여자 불문

※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대하여 1순위의 상속인

[입양제도]

구 분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입양 합의 ② 친생부모의 동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①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③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④ 친생부모의 동의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적효과	o 종전의 친족관계 유지 (친권은 양부모가 가짐) o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	o 종전의 친족 관계 단절 o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

(3)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계(친가), 모계(외가)를 따지지 않고, 양자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순위

(4)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가 되며, 만약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된다. 만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5)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고 혼인을 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음

(6)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7) 계모자 관계나 적모서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호간 상속이 일어나지 않음

(8)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9) 상속순위란 제1순위가 있으면 제2순위 이하는 상속권이 없으며, 제1순위 없이 제2순위가 있으면 제3순위 이하는 상속권이 없음

(10) 유언 등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유언의 유무는 유언서나 법원의 유언검인조사서로 확인)

사례연구

Q. A는 아내, 딸1명, 아들1명을 두었다. A는 아들과 함께 여행중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사망했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의 재산은 2억1천만원이다.

▷ 아내 : 1.5/3.5 × 2.1억원 = 9천만원 + 6천만원(아들몫) = 1억5천만원
딸 : 1/3.5 × 2.1억원 = 6천만원
아들 : 1/3.5 × 2.1억원 = 6천만원 →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

다) 대습상속제도(민법 1001조, 대습상속)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2) 배우자는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라) 상속부적격자(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 ·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에게만 미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마)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특별수익의 전형적인 경우로는 혼인자금,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사업자금 등이 해당됨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음

사례연구

Q.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9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3명만이 있다. 이 중 1명에게 3억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한 경우 결혼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인 9억원에 생전 증여가액인 3억원을 가산한 12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를 각 법정상속분율을 곱하면, 자녀 3명은 각각 4억원씩을 상속받고, 그 중 결혼한 자녀는 3억원을 미리 증여받았으므로 1억원만 추가로 상속받는다.

◈ 특별수익자가 아닌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 특별수익자인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 특별수익

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그 기여한 부분만큼을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

사례연구

Q.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자녀가 4명인데 그 중 1명에 대하여 4,000만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 상속재산은 2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1억 6,000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4명의 상속인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고 그 중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바. 유언상속

1) 유언의 보통방식(민법 제1065조)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만 인정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 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 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구 분	증인	검인절차
자필증서	×	필요
녹음유언	1인	필요
공정증서	2인	필요 없음
비밀증서	2인 이상	확정일자인(5일 내), 검인 필요
구수증서	2인 이상(구수)	법원에 검인신청(7일 내에 신청), 개봉 시 별도의 검인 불요

2) 유증상속(유언에 의한 상속)시 구비서류

가) 수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 녹음 중 한가지)

나)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다)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발급한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민법연구

◉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의 과다한 유증 또는 증여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침해가 심할 경우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은 불인정

◉ 유류분의 비율(민법 제1112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소멸시효(민법 1117조)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의 반환 청구해야 함

사례연구

Q.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9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9억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 상속인별 유류분은?

상속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상속비율				
법정상속분				
유류분				

2. 상속예금의 지급

상속인 전원이 내국토록 안내하되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처리가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받고 사실을 확인

가.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선정된 대표자로부터 당해 예금의 청구를 받는 경우

1) 피상속인(사망한 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
   - 필수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필요시 추가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2) 선정된 대표자의 지급청구 시 대표자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징구
3) 상속인 전원의 우체국 방문 시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지급청구서(창구에서 자필로 작성·서명하는 것을 확인) 징구. 지급청구서에 인감으로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고 신분증사본 징구 생략 가능

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된 예금의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징구

다.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판결문에 의하여 예금을 청구할 경우
: 판결문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인감증명(각각), 영수증(각각)

라.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국적유지자)가 있는 경우 : 해외거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장의 그 진정 성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 징구

마.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국적상실자)가 있는 경우 : 한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한국국적 상실) 한국의 영사확인 서류가 아닌 해당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 징구

바.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 시 상속예금의 처리

1)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예금주의 가족이 관할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의 선임을 요청하여 재산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재산관리인이 정당한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2) 예금주가 실종 선고된 경우 : 부재자로서 실종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실종선고로 그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민법 제28조) 그 실종선고의 사실을 확인하고(실종선고는 관보에 공고되므로 그 공고된 관보로 확인할 수 있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처리

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의하여 친권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조치
2)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때에는 대개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 징구
   - 친권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성년인 자의 소유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까지 감안하면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단순히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지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1) 상속포기 여부는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확인하고 포기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속업무처리절차에 준해서 처리
2) 만약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으면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해당되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지급 금지

사례연구

Q. 상속예금(100만원 이상) 분할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탁가능?
(상속인 일부 연락두절)

A1. 상속인중 일부가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인 전원이 성속예금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은 예금전액을 변제공탁하거나 연락두절 상속인 지분에 대한 변제공탁 할 수 있음

A2. 실무에서는 분할지급을 요청하는 상속인에게 공탁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안내하고 동의하는 경우 연락두절자의 지분을 변제 공탁

3. 상속예금과 관련된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업무

상속인,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가. 상속인 앞 정보제공 : 상속인 중 1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제공 가능
※ 상속인 1인 앞 정보제공 시에는 반드시 「지급정지」를 전산등록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나. 상속인의 동의로 제3자 앞 정보제공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다. 정보제공의 범위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예금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제공가능

4. 상속예금의 승계

계좌가입자의 사망 또는 유언에 의하여 계좌의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하며 승계는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그 효력 발생

가. 승계의 신고 : 계좌의 권리를 승계한 자는 3월 이내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가입국에 제출하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 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
2) 승계 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3) 미회수 수표와 각종카드는 회수 및 해지해야하며 계좌에 등록된 각종 약정은 승계
4)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장 사본 등
5)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승계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승계자의 동의서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일치하여야 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 계속 거래할 수 없으므로 상속신고와 동시에 해지하여야 함

1) 법적성격에 의한 제한 : 우편대체계좌대월, 전자금융약정거래, 현금카드약정거래
2) 가입 자격에 의한 제한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학생장학적금
3) 국세청과 관련한 제한 : 세금우대, 비과세 등
4) 기타 절차는 원부변경 절차에 준하여 처리

민법연구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3절 예금의 강제집행

1.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 압류명령의 의의

1)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
2) 우체국은 압류요청기관의 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에 대해 지급을 금지(채무자는 처분과 영수 권한 상실)

※ 우체국에서 처리하는 압류의 종류
- 예금압류, 보험압류, 국세환급금압류, 급여압류, 계약대금(미지급금) 압류 등

민사집행법 연구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압류명령의 당사자

1) 당사자

가) 채권자(신청인) :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 사람

나) 채무자(피신청인) : 채권자로부터 자기소유의 채권(예금)을 압류당한 사람, 우체국에 대하여는 채권자(예금주)의 지위에 있음

다) 제3채무자(우체국) : 우체국은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예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됨.

2) 제3채무자(우체국)의 책임

가) 피압류채권의 보존의무

나) 채권자가 요구시 공탁의무(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다) 공탁시 공탁사유 법원에 신고의무(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라) 추심명령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추심 장애사유가 없을시)

마)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명령시 진술의무(민사집행법 제237조)

3) 제3채무자의 권리

가)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나) 압류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

다. 압류명령의 신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할 예금의 종류, 금액 등을 기재한 압류명령신청서와 함께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 : 급부를 명하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의 정본말미에 『이 정본은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집행문이 부기된 것을 말한다.

라. 압류의 효력

1) 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가) 제3채무자(우체국)에게 채무자(예금주)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예금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

나) 우체국은 압류명령에 불구하고 예금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체의 항변사유(상계권, 질권설정, 기한이익 등)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상계 가능

다) 우체국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예금을 예금주에게 지급했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 채권자에게도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중복 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2)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2, 3항 금전채권의 압류)

※ 단,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송달된 압류명령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탈루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효력 발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연구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2) 검찰청으로부터 압류예금 통보(전언 또는 FAX)가 있는 경우 즉시

제1종사고 등록(압류 및 가압류)하여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3) 피압류 채권의 특정

가) 채권압류가 유효한지 여부는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채권」을 압류했는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예금주, 예금의 내용, 제3채무자 등을 밝혀야 함

- 예금주 : 명의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예금의 내용 : 종류나 계좌번호 중 하나(계좌번호가 다르더라도 예금종류가 하나인 경우는 유효)
- 제3채무자 : 금융기관명(지점명)

나) 압류채권의 표시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시 처리방법

- 판례의 경향을 참작하여 이를 무조건 무효로 처리할 것은 아니고, 어떤 예금을 압류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면 이를 우선 유효로 처리하되
- 업무처리상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경정결정을 받아오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4)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예금압류는 원칙적으로 압류결정문 송달 시점의 잔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있음

- 압류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한 압류시점의 예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침

나) 압류금액의 기재가 있으면 송달시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압류금액까지 효력이 미침

-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압류명령 송달 후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 주의

다) 예금의 압류 시 압류후의 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침

※ 민법 제100조 2항(주물, 종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5) 장래확정부 압류(장래효)

가) 압류결정문에 송달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장래입금분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 발생

- 장래, 추후, 계속 등 장래 발생하는 예금까지 포함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 경우 압류결정문의 압류요청금액으로 압류 등록

※ 법원의 결정문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현재 잔액으로 압류를 등록하는 것이 정당하고 판결
(압류일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효력 없음)

나) 단,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장래 입금을 포함한다." 는 표현 문구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압류등록 불가)

6) 압류금지채권

가) 의의

(1) 개인의 최저생활 보장, 공익상의 이유나 사회 정책적 목적

(2)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

나) 압류금지채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①)

(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나)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다) 병사의 급료

(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

(2)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가) 공무원연금법(제32조), 군인연금법(제7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40조)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제54조) 등

※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후(예를 들면,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 가능한 일반채권이 됨에 유의

7) 진술명령(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압류계좌 유무, 압류경합 사항 등을 진술(답변)하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237조)

나) 압류 명령과 동시에 법원의 진술명령(민사집행법 제237조)이 있을 때에는 그 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

- 현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법원으로 진술명령 답변서를 제출, 채권자는 법원에서 답변서를 열람하여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다) 채권자가 진술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우체국에서 직접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우체국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예금주)의 통장개설유무, 예금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 주의

사례 연구

< 압류채권자의 잔액조회 요청시 >

o 채권자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압류예금 정보조회 요청시 우정사업 정보센터 압류팀으로 추심 요청토록 안내(정보제공 불가)

- 우정사업 정보센터에서도 추심요청에 의한 추심금 지급(송금) 이외에 별도의 정보제공은 할 수 없음

< 추심지급요청서 > 작성시 하단 문구를 반드시 읽어 보도록 안내

o 실익이 없거나 계좌 없음 등의 사유로 추심이 불가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별도의 회신이 없으며, 접수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추심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접수 후 수일내에 요청계좌로 송금됩니다.

2. 압류예금의 현금화

가. 의의

1) 압류의 현금화란 압류의 제2단계 절차로서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함
   - 압류명령은 금전채권인 예금의 사용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므로 압류명령만으로는 채권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함
   - 채권자는 현금화명령으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해서 최종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됨
2)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해 처리되며,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같이 동시에 송달되는 경우가 대부분

민사집행법 연구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추심명령

1) 집행채무자(예금주)가 제3채무자(우체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집행채무자(예금주)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의 명령

- 추심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발생(압류경합시 법원공탁)

2)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

- 추심권한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집행행위의 연장
- 집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 완료를 신고함으로써 종결
-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추심채권자는 우선 변제의 보장이 없음

민사집행법 연구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추심절차

- 추심채권자 단독 : 추심요청 → 추심금 수령
  → 법원에 추심신고(채권자)
- 추심채권자 다수 : 추심요청 → 법원에 공탁(우체국) → 배당(법원)

민사집행법 연구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전부(轉付)명령

1) 집행채무자(예금주)가 갖는 제3채무자(우체국)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전부)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예금은 전부채권자 앞으로 이전하며(압류경합 발생 불가) 채무자(예금주)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채무자(예금주)의 채무는 소멸

민사집행법 연구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부명령의 대상 제외

가) 이미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예금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예금

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되어있는 예금(선의의 3자 제외)

다) 채권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예금

3) 전부명령의 효과

가) 채무자(예금주)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소유권이 채권자의 명의로 변경)

-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로 집행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
- 피전부채권(압류된 채권)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부터 채권의 위험은 전부채권자가 부담

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1)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추심명령은 별도의 추심 절차가 필요

2)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자기채권(예금) 처분에 제한을 받을 뿐이지 여전히 채무자가 채권(예금)의 권리자이며 위험부담도 채무자가 부담하며 압류의 경합이 발생(우선권 없음)

- 타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내지 배당요구 가능

3) 전부명령은 타채무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그 우선권이 인정되며, 이후 위험부담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구분	추심명령	전부명령
의의	예금주가 우체국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인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접 찾아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법원의 명령	압류된 채권(예금)을 채무자(예금주)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을 갖는 집행법원의 명령
송달형태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전부명령」이 함께 송달됨	
채권의 이전	추심신고하기 전까지 이전 되지 않음	전부명령의 확정을 조건으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소급효
배당요구	채권을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	전부명령의 확정을 조건으로 명령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없음
채권의 변제	압류채권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됨	전부명령의 확정을 조건으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변제됨
처분	추심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신고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음	채권의 이전으로 자기의 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처분 가능
타재산의 강제집행	잔고가 압류액에 미달될 때는 추가로 타 재산에 압류청구 가능	부족분이 있다하여도 추가로 재청구할 수 없음
대상	금전채권과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청구	금전채권만 해당
신고	채권자가 추심 후 법원에 신고	신고할 필요 없음
특징	경합시 압류액에 비례해 평등하게 잔고액을 배분	독점적 만족(손실 감수)
경합	o 전부명령의 경우 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 선행압류(가압류)가 있을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 전부명령 후 압류(가압류) 요청시 압류(가압류)는 무효 ※ 단 선행명령 집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유효	

3. 압류의 경합

가. 경합(이중압류)의 의의

1)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동일한 목적채권(예금)에 관하여 이미 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야 함

※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 압류명령이 동시에 집행된 경우,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 등

2)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여럿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피압류채권액(예금액)이 집행채권 합계액(압류요청금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압류액의 합계가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으면 압류의 경합이라 할 수 없음에 유의

민사집행법 연구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나. 경합의 효과

1) 법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우선권이 없으며 상호간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 일방의 압류는 타방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

2)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각 압류는 모두 유효하나, 후행 압류가 있을 당시 목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합이 발생하지 않음

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후행 압류가 있는 경우

나)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신고를 마친 경우

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라)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

3) 예금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후행 압류의 효력도 채권 전부에 미침(법 제235조 제2항)

※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과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침

4) 압류권자는 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해서만 예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추심·전부명령이 없다면 예금 지급 불가

5)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함(법 제248조 제3항)

※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정되므로 채권 전액의 공탁을 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연구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공탁 연구

1. 공탁신청시기
 가. 예금에 대해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나. 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2항)
 다. 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시 또는 순차로 같은 예금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그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2) 압류채권자 1인이 공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방법
 가. 통상 법무사를 통해서 공탁업무를 진행하지만 그 공탁을 하는 주체는 제3채무자인 우체국이 된다.
 나. 공탁사유와 공탁금액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탁서 원본에 첨부하여 명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탁 비용 :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지출되는 인지대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필요경비로 공탁 금액에서 우선 공제 받을 수 있고, 채권 회수에 대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다.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간 경합

1) 법원의 압류(가압류)와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추심 요청 시 경합사실을 안내하고 지급 거절

※ 채권자가 추심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집행공탁

2) 압류(가압류)·추심(推尋)명령과 전부(轉付)명령의 경합

가)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나) 전부명령 송달 후 추심명령 송달된 경우 추심명령은 무효

※ 단, 추심명령을 충족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송달된 전부명령은 유효

라. 기타 압류의 경합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압류)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 절차)가 경합된 경우

-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요청시 경합사실을 안내하고 지급 거절**
- **채권자가 추심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집행공탁**

2)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압류)와 국세징수법 준용기관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요청시 경합사실을 안내하고 지급 거절**
- **채권자가 추심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 집행공탁**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다60982 판결(2015.7.9.)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체납처분절차

가. 체납처분절차의 의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그 체납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절차

2)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가 갖는 지급금지 · 처분금지에 더하여 추심의 권능도 함께 가짐(민사집행법의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효력을 동시에 보유)

※ 국가 등이 스스로 가지는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공매)하여 청산(배분)하는 강제집행절차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의 강제적 집행절차로 민사상 강제집행과 동일하나 집행권원을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점이 민사상 강제집행과 다름

국세징수법 연구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1) 체납처분압류의 징수권자는 국세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

2) 국세징수법에 의해 국세 · 지방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 가능

※ 국세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재평가세 등

※ 지방세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등

※ 국세, 지방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조세관련 세목 확인

3) 국세체납절차 준용기관

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나) 국세청(세무서)외 각 강제징수권자는 개별법의 근거(관련근거에 해당 법령명시)에 의해 국세징수법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압류 가능

※ 압류통지서 송달 시 해당 법령의 실제 법조문을 확인하고 예금계좌 압류

다. 압류의 경합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절차)가 경합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절차)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먼저 송달된 기관에 우선권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절차)와 국세징수법 준용기관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절차)와 국세징수법 준용기관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송달 시점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압류가 우선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체납처분절차) 기관이 추심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기관에 추심지급(준용기관의 추심요청시 체납처분압류 등록사실을 안내하고 지급거절)

3) 국세징수법 준용기관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 준용기관은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기관간 협의**하여 처리

국세기본법 연구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 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 청구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5. 압류해제

가. 압류해제는 압류해제통지서 정본이 우체국에 송달되어야 함

※ 다만, 해제의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정도가 본래의 결정문에 비하여 완화되는 관계로 공문서(우편)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함

나. 전부명령은 결정과 동시에 예금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효력발생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어 법원에서 압류해제명령을 발할 수 없음

다. 압류채권자와 예금주가 합의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공증사무소(공증인가를 받은 변호, 사 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공정증서(압류채권포기각서)를 징구하고 압류해제

6. 우정사업본부 압류업무 처리절차

가. 우정사업정보센터(압류팀) 예금압류 업무 범위

1) 압류팀(정보센터)은 예금 · 보험 · 국세환급금 압류관련 업무 담당

가) 압류등록 · 해제 · 추심지급, 진술명령 답변, 압류 · 추심지급 고객안내 통지서 발송, 집행공탁, 압류관련 문의 답변 등

2) 압류팀으로 직접 송달되거나 우체국에서 이첩된 압류서류 등록

3) 국가기관 등에서 송달된 추심지급, 압류해제 등 압류관련 모든 업무

가) 단, 고객 원장확인, 예금주 연락·의사확인 등 필요한 경우 계좌유지국으로 해당업무를 이첩

- 원부확인 필요, 상계, 대월 사용고객, 지급동의서 작성필요,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의사 확인, 임의단체 보유 고객 등

4) 처리한 압류관련 서류 및 우체국에서 이첩된 압류서류 보관·폐기

나. 우체국(현업관서) 예금압류 업무 범위

1) 현업 우체국은 우체국으로 송달된 압류통지서 등록 및 우체국 방문고객에 대한 업무처리 담당

가) 압류등록 : 우체국으로 직접 송달된 압류서류 등록

나) 특별지급 : 국세환급금 및 압류금지채권 지급

2) 계좌유지국에서만 가능한 업무

가) 추심지급

(1) 질권설정・계좌대월약정 계좌 및 정기 예・적금 등 채무자(예금주)와 연락 또는 의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채권자가 직접 계좌유지국을 내방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정관・회원명부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임의단체(동창회 등)

나) 압류해제

(1) 정관・회의록・회원명부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임의단체

(2) 개별법에 따라 압류해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해당기관 직원이 유체국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처리한 압류관련 서류는 자체보관・폐기(단, 법원서류는 모두 압류팀으로 송부)

다. 압류등록 절차

1) 압류통지서 송달 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채무자 확인

가) 제3채무자용 결정문 여부, 직인날인 여부, 당사자 오 지정, 주민등록번호 누락, 집행 불능 채권 여부 등

나) 채무자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등)로 결정문에 기재된 우체국에 예금의 존재 유무 확인

2) 압류 전산등록

가) 압류명령이 정당할 경우에는 제1종 사고등록(0301거래)

나) 압류 등록 시 압류의 효력에 따라 압류결정문(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압류를 등록

※ 상계 후 압류등록 : 예금주가 우편대체 계좌대월 이용자 등 우체국 보유 채권이 있을 경우 우선 상계처리하고 잔액에 대해서만 압류등록

라. 압류채권의 지급절차(추심・전부명령)

1) 지급청구권자 확인

가) 추심명령・전부명령 결정문 제출 → 우체국에 등록된 압류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신분증으로 채권자 본인여부 확인

나) 체납처분압류를 요청한 세무서, 구청 등은 압류통지서 및 공무원증 확인(공단은 체납처분압류에 준하여 압류통지서 및 직원신분증 확인)

2) 예금종류별 지급방법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압류채권자의 추심요청 시 무통지급

나)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정기 예・적금) : 예금의 만기일 이후 무통지급

다) 만기 이전이라도 예금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중도해약 후 지급가능

라) 중도해약 동의여부 통지를 했으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정기적금 월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의사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가능

마) 채권자의 지급요청 민원 발생 시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약하여 추심지급 가능

마. 압류예금 지급시 징구서류

1) 채권자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징구서류

가) 직접 현금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예금계좌로 추심금을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서로 영수증 갈음

나) 개인 : 신분증, 결정문, 지급청구서

다) 법인 : 신분증, 압류결정문(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지급청구서, 지급금 영수증, 법인등기부초(등)본

라) 국기기관 및 공단 : 압류통지서(압류조서), 직원신분증, 지급청구서

2) 채권자가 압류팀에 추심금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징구서류

가) 우편으로 송부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채권자 요청계좌로 압류예금 이체(이체확인서로 영수증 갈음)

나) 개인 : 인감으로 날인한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압류결정문(사본), 인감증명서, 입금요청계좌사본(지급요청서류에 계좌번호 기재 시 생략가능)

다) 법인 : 인감으로 날인한 지급요청공문, 압류결정문(사본), 법인등기부초(등)본, 인감증명서, 입금요청계좌사본(지급요청공문에 계좌번호 기재 시 생략가능)

라) 국가기관 및 공단 : 지급요청공문(문서에 계좌번호 기재)

바. 압류금지예금(150만원 이하) 업무처리

1)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년 7월 신설),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2013년 2월 개정)에 따라 150만원 이하 예금압류 시 주의

※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가 150만원 이하(국세징수법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

2) 개인별 예금 잔액 150만원은 우체국 예금 잔액만의 합계가 아닌 모든 금융회사 예금의 합계 금액임에 주의

※ 우체국에서는 타금융회사의 개인별 예금 잔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선 압류를 등록

3) 전 금융회사 개인별 잔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추심요청이 있더라도 추심지급 보류

※ 압류채권자가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추심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

※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지급(예 : 200만원인 경우 50만원 지급, 150만원 지급보류)

※ 예금주가 법원의 압류범위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

※ 예금주 동의 확인방법

- 우체국 직원이 예금주의 지급동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동의서 징구)
- 압류채권자가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지급동의서를 압류팀으로 제출하는 경우

※ 압류범위 변경결정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기 결정 된 압류명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법원의 명령. 우체국으로 변경결정이 송달됨

- 예시 : 기 압류된 예금 중 금 000원은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
  우체국 예금계좌 00000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

사. 압류채권자의 잔액조회 요청

1) 채권자에게 계좌유무 또는 계좌잔액 등을 알려주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가

2) 채권자가 추심요청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추심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장유무, 잔액 등을 안내할 경우 실명법 위반(금융위원회 유권해석)

3) 금융위원회의 압류사실 조회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가) 세무당국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정보조회 권한을 보유하고 정보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압류를 요청한 것으로, 이미 예금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압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특정계좌(압류요청계좌)에 대한 압류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회신가능

나) 실명법에 의한 정보조회 권한이 없는 그 외 압류등록(법원, 공단 등) 요청에 대해서는 압류등록 유무에 대해서도 답변 불가

다) 또한, 세무당국의 경우에도 단순 압류사실 이외에 해당 계좌의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상세내역 및 추심불가 사유를 회신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필요

라) 채권자의 추심불가사유 확인 요청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 추심 불가사유에 대한 답변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임에 주의

아. 압류결정문이미지시스템

1) 결정문을 스캔하고 주민번호, 사건번호 등 주요정보를 자동 인식하여 압류처리에 활용하고, 압류결정문을 이미지DB로 보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11.8.1)

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던 법원명, 사건번호, 채무자 주민번호 등을, 스캔 화면에서 데이터로 인식하여 금융시스템과 자동 조회

나) 담당자의 입력오류 및 등록누락 방지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압류등록시간 단축을 통한 인력절감, 서류 보관비용 절감 등 효과

2) 압류결정문 이미지시스템 도입에 따라 압류결정문을 금융단말에서 직접 조회・출력 가능

가) 0301화면에서 「법원이미지 시스템」 클릭 후 사건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검색(압류팀 신설(‘08. 5월) 이후 송달된 압류결정문)

나) 법원 결정문 조회

- 금융고도화 시스템 0301거래 → 법원이미지시스템 → 법원문서 조회 화면 → 사건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조회 → 출력되는 로우 더블클릭

자. 압류결정문 보관

1) 압류결정문 보관(보존)기간은 5년으로, 압류결정문을 종이로만 보관할 경우 압류 해제 후 5년간 보관

2) 압류결정문을 이미지파일(압류팀)로 보관 시 종이서류 보관기간 단축(5년→1년)

※ 종이서류와 전자화문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전자화 완료 압류결정문은 보관 필요성이 없으나, 수작업에 따른 민원 등에 대비하여 1년 보관 후 폐기

3) 보관기간의 기산점은 문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됨

4) 보관은 문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보관기간을 정할 필요도 없이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효력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보관의 필요성 발생

5) 압류결정문 보관기간 5년이란 압류가 해제된 익일부터 5년간 압류서류 보관을 의미

※ 현업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나 보유기간 5년이 경과된 압류결정문을 폐기하는 사례 발생, 예금주가 압류등록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우체국에서 압류서류를 폐기하여 압류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민원 발생

4. 업무처리 주의사항

가. 기초생활비 등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압류요청

1) 압류등록 ·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 없음

2) 기초생활비 등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예금주의 지급 요청 시 예금주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일부해제)을 신청하여 우체국에 압류범위 변경결정 또는 압류해제통지서 송달된 경우 지급 가능

나. 압류통장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 예외지급 규정

1) 원칙 : 법원의 “압류범위 변경결정”을 제출한 경우에만 채무자(예금주)에게 지급 가능

2)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급 등 책임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수급대상자 확인서”와 “수급계좌변경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채무자(예금주)에게 지급 가능

- 예외지급 대상 : 기초생계비, 장애인연금, 경증장애,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5종)
- 징구서류 : 수급증명원, 본인신분증사본, 변경확인서,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사본
- 예외지급 내역을 금융단말거래(0307) 등록

※ 압류금지통장으로 수급계좌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서 압류범위변경결정을 판결받아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지급보류제도

1) 기초생활비·국민연금 등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되는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사회적 약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채권자에게 추심 지급을 보류 등록 가능

가) 채무자(예금주)가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채권자에게 지급(추심)을 보류 등록

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범위변경 결정이 송달되면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범위변경결정이 기각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2) 예금주의 지급보류 요청이 있으면,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접수가 없더라도 지급보류 등록 가능(예금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급보류 등록)

가) 예금주가 법원에 압류범위 범위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미리 지급보류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나) 법률구조공단에 범위변경을 의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급보류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다)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라)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예금주 보호를 위해 지급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라.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1)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출금 전용통장으로 기초생활비 이외의 다른 금원은 입금・이체 불가, 출금만 가능

2)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압류에서 제외

마. 예금주에 대한 압류・추심지급 사실 통지

1) 압류사실 통지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법적의무는 아니며 미통보시에도 책임 없음

2)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압류팀(정보센터)에서 압류등록・추심지급・압류해제 시 일괄 통지(SMS+일반우편)

바. 압류계좌로 오송금된 금액 반환요청 : 압류채권자의 서면 지급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반환 가능

사. 예금주의 압류계좌 입금정지 등록 요청 : 압류채권자의 채권회수 방

해행위가 될 수 있어 금지(전산상 등록불가)

아. 계좌대월 사용자에 대한 압류결정문 송달 : 대월금 우선회수 필요. 대월을 직권해약하고 대월금 상환절차 진행

사례연구

임의단체계좌 압류업무

o 주민등록번호로 압류를 요청한 경우

- 압류팀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계좌 전체를 압류등록, 계좌개설국에 고객 원장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첩
- 계좌개설국 : 예금주의 이의제기 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 요청 시 원장을 확인하고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임의단체명의 계좌는 압류해제

o 계좌번호로 압류를 요청한 경우

- 압류팀 : 압류결정문에 압류요청계좌를 명시한 경우 해당계좌 압류 등록, 계좌개설국에 원장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첩
- 계좌개설국 : 임의단체의 이의 제기 시 해당계좌에 대한 압류명령 해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법원의 압류해제통지서 송달 시 압류해제

※ 임의단체의 이의제기가 있는 계좌에 대해 압류채권자의 추심지급 요청시 이의제기 사실을 안내하고 추심지급을 보류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

가입당시 임의단체서류 미제출 압류이후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

o 주민등록번호로 압류를 요청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압류해제 가능, 계좌번호로 압류를 요청한 경우 압류해제 불가

o 예금주와 압류채권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에 공탁

※ 임의단체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국은 압류결정문 및 원부 확인에 철저를 기한 후 압류해제 및 추심지급

제4절 예금의 양도 및 질권설정

1. 예금의 양도

가. 예금의 양도란 : 예금채권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구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나. 양도금지특약

1) 예금 채권은 금전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채권의 성질상 당연히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

민법 연구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서 그 양도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예금주에 의한 임의적인 예금양도가 발생할 경우 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예금거래약관에서 양도를 제한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연구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 예금의 양도절차

1)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의 양도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양도의 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승낙”을 얻어야 함

2) 타금융기관에서는 양도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승낙을 통해 예금채권에 대해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3) 승낙은 통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금 양도양수 승낙서(신청서)”를 양수인·양도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금융기관이 확인·날인(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법령·성질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①근로자 장기저축 ②장기주택마련저축 ③비과세저축, 세금유대종합통장, 근로자우대저축 ④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민법 연구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예금양도 효력

1) 승낙을 통해 예금양도가 그 효력을 발생하면 예금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구 예금주)에서 양수인(신 예금주)으로 이전

2)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면, 예금통장 및 예금거래

신청서, 전산원장 등의 예금주의 이름 및 주소를 양수인으로 변경

3) 예금양도가 유효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이자채권도 함께 이전

※ 다만 이미 발생한 이자는 이전하지 않음

2. 질권설정

가. 질권설정의 의의 : 예금주가 우체국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위하여 예금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고 기일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 예금의 원리금에서 채권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

※ 질권설정 당사자 간의 합의(질권설정계약)와 채권증서(예금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

나. 질권설정금지특약

1) 금융기관의 예금은 그 예금을 받은 금융기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인 등 제3자가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2) 우체국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예금담보대월)는 자기가 받은 예금에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제3자가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예금양도와 같은 이유에서 질권설정 금지 특약을 두고 있음(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민법 연구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질권설정의 효력

1) 예금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우체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를 승낙하면 우체국은 채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의 경우와 같이 질권자(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
2)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은 그 이자에 대하여도 미침
3) 정기예금의 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주(질권설정자)에게 지급 가능
4) 1계좌에 대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1회이상 질권설정 가능

※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기타 법령에 의해 제한된 예금(환매조건부채권 등)

※ 우체국이 질권자인 경우 거래약정에 의해 상계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라. 질권설정의 승낙

1) 질권설정승낙신청서 2부와 예금통장·증서를 받고 본인 확인
   - 다만 질권자가 우체국인 경우 (근)질권설정계약서로 갈음
2) 질권설정승낙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거래인감과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

3) 질권설정승낙신청서 1부는 우체국장 결재 후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신청서에 직인을 찍어 질권자에게 교부

4) 질권설정 승낙 시 유의사항

예금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우체국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질권자는 질권설정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49조) 질권자는 질권설정에 있어서 당연히 우체국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또한 우체국이 이를 승낙하면 질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갖게 되므로 아래 사항을 먼저 조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 승낙

가)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해제 후에 승낙

나) 승낙의뢰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거래인감(서명)의 일치여부

다) 예금주에 대한 우체국의 채권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보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마. 질권 설정된 예금의 지급

1) 질권 설정된 예금의 원리금은 질권자의 질권해제 통지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금주에게 지급 불가(민법 352조)

2) 질권 설정된 예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질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에게 「기일에 질권자로부터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겠으니 이의가 없는가」라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확인

※ 예금주와 동행하여 지급청구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아래절차에 따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예금주와 동행일 경우 동의서와 예금주 주민등록증 사본 복사)

3) 질권자로부터 질권 실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의 「예금기일통지에 의한 조회」에 대하여 예금주가 이의 또는 회답이 없을 경우에만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 가능

가) 질권 설정된 예금을 지급할 때는 질권자로부터 증서 또는 통장을

제출하게 하여 증서의 영수란이나 지급청구서(찾으실 때) 전표에 「○○년 ○월 ○일자로 질권 설정 승낙 받은 질권 표기금액을 정히 수령함」이라 명시하고 질권자가 기명날인. 이때 질권자 영수인은 질권설정승낙의뢰서의 인감과 같음이 원칙

나) 질권설정등록을 해제한 후 해당 예금을 해지하여 지급

다) 예금주의 기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 범위 내에서 질권자의 채권액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보관금(임시보관금)계좌에 입금하고(정부보관금관리세칙에 따라 처리) 즉시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 찾아가도록 안내

4) 피담보채권 기일 전에 만기도래한 예금의 지급은 그 원리금을 예금주나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위의 「예금기일통지에 의한 조회」에 대하여 예금주가 질권자에게 지급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지급 가능

5) 질권자와 예금주의 분쟁이 우려될 때에는 어느 일방을 위한 지급보류시 채무이행의 지연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탁하는 것이 안전(민법 제353조)

가) 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리금 중에서 그 변제액을 변제 공탁할 때에는 이를 해지하여 질권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의 금액을 질권설정자(예금주)에게 지급 가능

나) 공탁의 절차는 수취인을 질권설정자로 하고, 질권자의 성명과 질권이 존재한다는 뜻을 공탁서에 덧붙여 기재

바. 예금 만기 전 질권실행

1) 우체국을 위한 질권설정인 경우에는 상계처리

2)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인 경우에는 예금 만기 시까지 지급 불가

- 다만, 우체국, 예금주, 질권자 3당사자의 예금 만기 전 지급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지급 가능

제3장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1절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1. 개인에 대한 회생제도, 파산선고시의 예금거래

가. 개인회생제도

1) 의의

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 조종해 파산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 (2004. 9. 23 시행).

나)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다)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면책결정) 채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제도

※ 보증인의 보증채무 :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채무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 없음)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나) 채무범위 : 담보채무(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최대 5억원)

다) 변제기간 :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도 원금면제 가능

가용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으로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 함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2016년기준 개인회생생계비

1인(974,898원), 2인(1,659,961원), 3인(2,147,411원), 4인(2,634,860원) ~

라)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마) 개인회생의 결과에 따른 결정사항

(1)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금지명령 결정

※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2) 개인회생 개시결정 : 추심지급 등 불가하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발생

(3) 변제계획안 인가 : 추심명령 등 법적제한 해제(무효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 가능(동법 제144조 제1항)

-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우체국에 예금·보험 또는 상계 가능한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 즉시 연체대월금과 금전채권을 상계하여 개인회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상계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특수채권 편입)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즉시 지방우정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인 회생 관리절차 진행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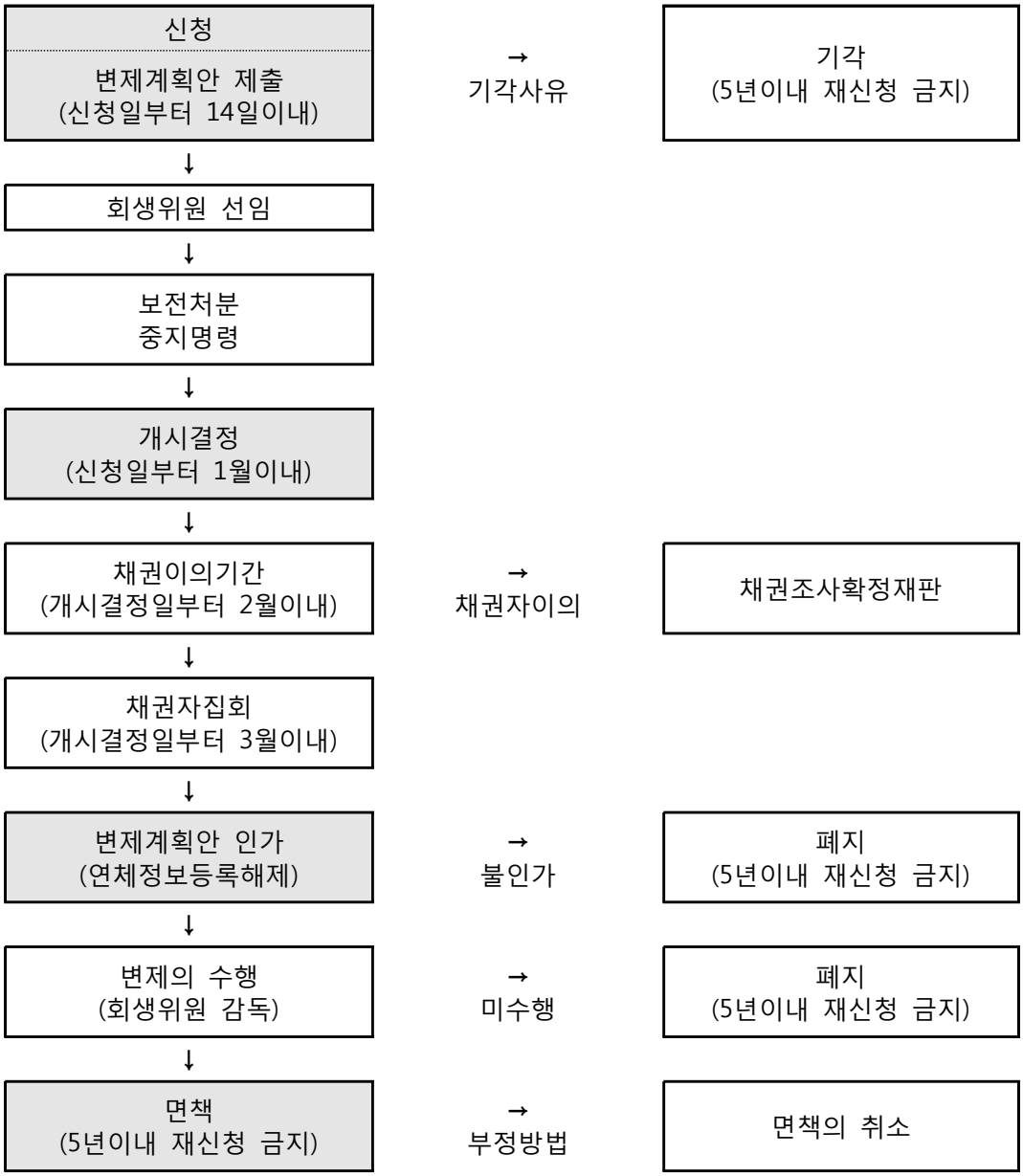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기각사유
기각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
불인가
폐지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지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4.9.23	1962.1.20
대상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때 삭제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시 삭제

나. 개인파산

1) 의의

가) 개인파산이란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認證)하고 파산 결정을 내리는 행위

2) 주요내용

가) 파산신청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

나) 법원의 파산결정

(1)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힘

(2)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여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

다) 파산자의 의무

(1)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공무원・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

※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음.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하기되 함

라)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신청

(1) 파산선고는 사실상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으로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음

(가) 전부면책 : 채무 전액 탕감

(나) 일부면책 : 채무액의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 탕감

※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재를 구입했거나 유흥비로 썼을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카드깡 등)를 했을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재산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면책 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면책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되며, 복권이 되면 신용불량 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

(3)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짐)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 받을 수 있음

마) 파산선고 절차 :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에 이어 ③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결정이 내려짐

사례 연구

Q 파산선고에 우체국의 조치사항은?

A1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우체국은 계좌대월 등은 즉시 직권해지 조치 후 보증인에게 채권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A2 파산절차 진행중일 경우 본인에 대한 상환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보증인에게 상환을 독촉하거나 본인 예·적금에 대한 상계실시(상계는 가능)

A3.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사유를 파악하고 우체국 피해예상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1) 자산건전성의 분류

가) 의의

(1) 보유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2)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 촉진,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

나)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자산건전성 분류	분류 기준*	연체기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정 상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연체 1개월(30일) 미만	1%
요주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연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0%
고 정	채무상환능력의 저하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연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
회수의문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연체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55%
추정손실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연체 12개월 이상	100%

※ 분류 기준 :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집('02. 1월)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우본 고시 제2016-4호)

제12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3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②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AML(Anti Money Laundering)] :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금융회사로 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

1. 자금세탁방지제도 개념

가. 개요

1)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
2)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
3)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는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동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직 · 간접적 또는 불법 · 고의적인 모든

수단에 의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 로 정의

4) 국내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가) 자금세탁행위

(1)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2)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1)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2)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 · 제공 · 운반 ·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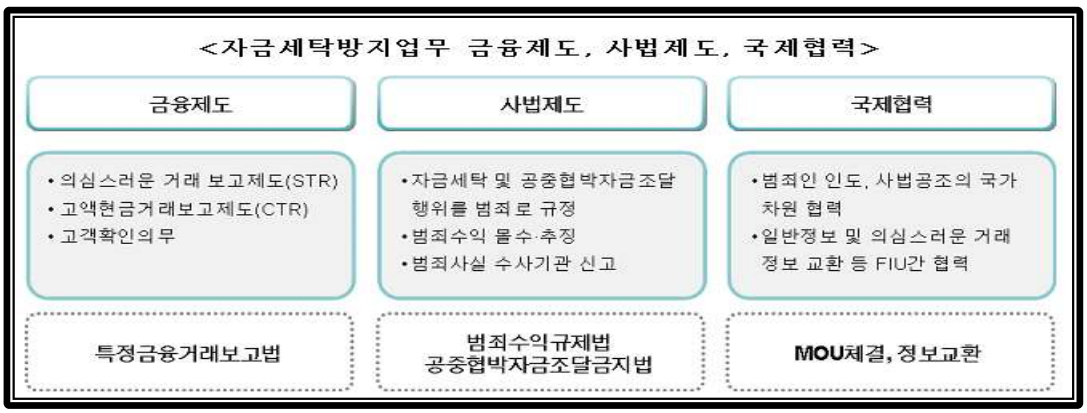

※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다. 관계법령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라. 자금세탁의 단계 : 배치(예치) 단계 ▶ 반복(은폐) 단계 ▶ 통합(합법화) 단계

1) 배치단계(Placement)는 금융시스템 내부로의 불법자금 유입
2) 반복/은폐단계(Layering)는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한 반복 거래
3) 통합단계(Integration)는 합법적인 자산인수를 위해 통합된 자금이 사용되는 과정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주로 배치, 반복단계에서 불법거래를 인식하여 대처하는 제도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용체계>



2.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 AML : Anti Money Laundering(자금세탁방지)
-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심스러운 거래보고)
-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고액현금 거래보고)
- CDD : Customer Due Diligence(고객확인의무)

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1) 보고대상 거래

-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2) 판단기준

- 직원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고 직원 본인의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결정

3) 보고서 작성

가)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의 업무처리 순서는 AML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여 우체국은 담당자, 책임자 확인 후 지방우정청 보고(AML시스템)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

나) 지방우정청은 우체국에서 보고된 의심거래 자료에 대해 상세 검토하여 청 담당자 확인, 청 책임자 확인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4) 미보고시 제재사항

가) 미보고 기준 :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의심거래임이 확실한 거래

나) 법적제재 : 미보고 건당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직원 제재

5) 면책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 증언거부

6) 비밀 누설시 제재

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1) 보고대상

가) 기준금액 : 2,000만원

나) 현금거래(금융창구거래 및 CD/ATM 거래 등 현금거래)

※ 1인이 1일 동안 우체국을 통해 거래한 현금거래의 총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관련 거래 전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다) 보고시기 : 거래발생일로부터 6일 후 전산 추출하여 보고(정보센터)

현금거래 : 현금의 실질적인 이동이 발생한 거래의 금액
- 금융거래 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 후 현장에서 바로 전액 재입금한 경우
  ☞ 현금거래 정당 : 현금이 실질적으로 이동하였음

대체거래 : 현금의 실질적인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의 금액
- 금융거래 시 전산적으로 지급 거래 후 전액 재입금한 경우
  ☞ 대체거래 정당 : 현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

2) 보고제외 대상 : 정보센터에서 전산으로 자동 분류

※ 100만원 이하 현금거래, 공과금/등록금 수납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거래 등

3) 현금거래 예시

거래유형	거래 내역예시	비고
계좌거래	금융회사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비계좌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경우	현금의 영수
환전거래	외화를 한국은행권으로 환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유가증권거래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현금의 지급.영수
계좌+비계좌 거래	계좌에서 현금 출금 또는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무통장입금 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4)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미실행시 법적인 제재사항

가) 현금 / 대체 오구분 입력 : 허위보고 1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금융회사 제재(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나) 고액현금거래보고 미실시 : 건당 1천만원이하 과태료

※ 금융거래 시 현금/대체 거래구분 철저, 3073(CTR 현금거래 확인)실시

다. 고객확인의무 대상(CDD)

1) 고객확인 대상 : 계좌 신규개설 / 보험청약

※ 계좌 신규 개설 예시 : 예금·보험·대출·보증 계약의 체결

2) 2천만원(외화 1만불, 현금/대체 구분 없음)이상 1회성 금융거래

※ 1회성 금융거래 : 송금/수표발행·교환 등 계좌개설 없이 할 수 있는 거래

3)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자금세탁의심거래)

4)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나) 100만원이하의 송금 및 100만원이하의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다) 법원공탁금, 정부 및 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등

5) 고객별 자금세탁위험 평가

<고객별 자금세탁위험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평가 비율	비고
고객별 자금세탁 위험수준 평가	국가위험 평가 점수 ①		o 고위험 국가	5점	25%	1.25점
			o 중위험 국가	3점		
			o 저위험 국가	1점		
	고객위험 평가점수 ②	개인/개인사업자/법인/비영리단체	o 고위험 고객	5점	50%	2.5점
			o 중위험 고객	3점		
			o 저위험 고객	1점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점수2) ③		o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5점	20%	1점
			o 중위험 상품 및 서비스	3점		
			o 저위험 상품 및 서비스	1점		
	채널위험 평가 점수 ④		o 고위험 채널	5점	5%	0.25점
			o 중위험 채널	3점		
			o 저위험 채널	1점		
합계(= ①×0.25 + ②×0.5 + ③×0.2 + ④×0.05)					100%	5점

- 평가기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 평가주기 : 연 2회(6.30. 및 12.31.), 평가 후 익월 10일 반영

☞ 평가결과 3.8점 이상은 자금세탁 고위험고객으로 분류

- 중 / 저위험 고객(3.8점미만) : 실명 및 주소, 연락처, 직정정보 확인
- 고위험 고객(3.8점이상) :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거래목적, 자금출처 등 추가 확인)

6)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시 법률적 제재 :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무시정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금융실명법과의 관계>

구 분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고객확인(특정금융정보법)
고객정보 수집	실명확인	고객확인의무 이행으로 신원확인, 실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비밀보장예외 및 정보제공	예금주의 요구, 동의, 영장 등 특별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 사실 통보	정보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타인 누설금지)	본인 통보 금지 (보고사실 누설 금지)
면책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 증언 거부

<STR과 CTR의 비교>

구 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내용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금액 이상 현금거래 내용을 FIU에 보고
법령상 보고대상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고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고액 현금의 지급, 영수거래 CTR 보고회피 목적 분할거래
제외대상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의 수납·지출거래 등 외국통화 거래
기준금액		원화 2천만원 이상
판단기준	금융회사 종사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을 고려 판단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금액)에 따라 보고
보고시기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때로부터 지체 없이 보고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보고
보고방법	On-line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On-line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보고서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서, 다만, CTR보고회피 목적 분할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로 보고
장점	금융회사 직원의 전문성 활용 정확도가 높고 활용도가 큼	자금세탁행위 예방 분석 자료로 참고
단점	금융회사 의존도가 높음 참고유형 제시 등 어려움	정확도가 낮음 금융회사의 추가비용 발생
기타	FATF 권고사항 중 고객확인의무와 함께 AML/CFT의 핵심적인 제도	FATF의 선택적 권고사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도입·운용

제3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1. 전기통신금융사기

가. 정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대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기타사기 행위

예시) 물품대금(전자상거래)사기, 조건만남사기,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등

2. 피해금 환급제도

가. 지급정지 접수

1) 사기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가 사기를 신고하거나, 우체국이 사기를 인지한 경우 즉시 사기계좌로 등록

2) 신고 접수 시 보이스 피싱(1971-1), 메신저 피싱(1971-2), 대출사기(1971-3)로 등록

가) 사기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입금과 지급이 정지

나) 물품사기,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사기(자동차, 부동산 등), 만남사기 등은 제외

※ 일반 사기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우체국에 방문토록 안내

나. 지급정지 등록 시 준수사항

1) 신고자 확인 철저 : 실명, 연락처, 본인여부, 피해내역 등

2) 1971거래 입력 철저 : 필수 입력사항(사고계좌번호, 사고구분) 등록 후 나머지 내역 상세히 모두 입력

※ 지급정지 신청은 전화(경찰서, 우체국, 고객센터)로도 가능,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시 3일 안에 서면(구비서류 등) 제출 해야 함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당사자 통지>

구 분	통지 시기	방 법
명의인	지급정지 조치 이후 지체 없이	서면통지 등(단,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조치 이후 지체 없이	팩스통지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통지)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서류접수) 이후 지체 없이	교부 등

<유형별 통지대상>

구 분	명의인	피해자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			○
금융회사가 요청한 경우	○	○	○		○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			○	○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경우	○				○

3) 피해금 환급(피해구제)신청

가) 피해자가 신청시 구비서류

① 피해구제 신청서

② 피해자 신분증(사본 가능)

③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 증명서류)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멸채권 환급 청구시 금감원 필요)

⑤ 지급정지요청서(타 금융기관에서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받아 송부된 경우)

나) 대리인 신청

① 지급정지 관련 구비서류

② 위임관계 확인 서류(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발급인감증명서)

다.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요청

1) 지급정지 조치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서류제출 및 공고 요청

가) 금융감독원 제출서류

피해자에게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서 ·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자료 사본 ·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서 · 지급정지요청서 ·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자료사본 ·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채권소멸절차 개시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해금환급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명의인 계좌번호에 사기계좌번호 입력 후 조회

라.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1) (명의인)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 제기

- ①이의제기신청서 ②이의제기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2) (우정사업정보센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지

마.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1)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바. 채권의 소멸

1) (명의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 소멸

2) (금융감독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명의인,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

※ 통지내용 :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사실 공시

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1) (금융감독원)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

2) (우체국 금융고객센터)감독원에서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 지급

가) 지급방법 :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

나) 피해환급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사기계좌는 지급정지 해제

※ 실무적으로는 즉시 해제 되지 않고, 별도의 해제처리(명의인 요청등) 해야 함

다) 피해환급금 지급 결과 금융감독원으로 통지(3일 이내)

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피해환급금 지급 불가자)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자

자. 소멸채권 (명의인) 금융감독원에 환급 청구 가능

1)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문헌】

1. U 편람, 우체국금융, 우정사업본부 2016
2. 민법(법률 제13710호, 시행일 2016. 1. 1.)
3.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4
4. 민사집행법(법률 제13286호, 시행일 2015.11.19.)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12711호, 시행일 2014.11.29.)
6.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우정사업본부 2014.12
7. 우체국예금 압류업무 처리지침, 우정사업본부 2014.5
8.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전국은행연합회 2013.12
9.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지침, 우정사업본부 2014.12